

발 간 등 루 번 호

11-1661000-000080-01

2025년

#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 일러두기 |

- 본 질의·회신집에 수록된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내용이 유사하다 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질의·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해당년도 법령을 함께 수록하였으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기 부적절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I

## 소방시설법

1. 건축허가등의 동의	3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7
3.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9
4.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11
5.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4
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16
7.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9
8.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21
9.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25
10.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26
11. 무창층의 정의	27
1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29

II

## 화재예방법

1. 화재의 예방조치 등	47
2.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49

III

## 다중이용업소법

1.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등	61
2. 신종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등	65
3. 영업장 내 안전시설등 설치 관련 질의	68
4. 영업장 구획 등 관련 질의	78
5. 기타 질의사항 등	87

**IV****초고층법**

---

1. 예방 및 대비.....	95
-----------------	----

**V****소방시설공사업법**

---

1. 설계.....	107
2. 시공.....	108
3. 착공신고.....	112
4. 완공검사.....	116
5. 감리.....	118
6.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	124
7.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128
8. 소방기술자의 의무.....	133
9.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134

**VI****화재안전기준(기계)**

---

1. 옥내소화전설비.....	139
2. 스프링클러설비.....	153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77
4. 포소화설비.....	179
5. 가스계소화설비.....	180
6. 제연설비.....	182
7. 연결송수관설비.....	183
8.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184

# CONTENTS

VII

## 화재안전기준(전기)

---

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91
2. 비상방송설비	192
3. 자동화재탐지설비	197
4. 유도등 및 유도표지	210
5. 무선통신보조설비	215
6. 소방시설의 배선공사	216

VIII

## 화재안전기준(용도별)

---

1. 도로터널	223
2. 지하구	224
3. 건설현장	226
4. 전기저장시설	228
5. 공동주택	234
6. 창고시설	243

2025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I

## 소방시설법







## 1. 건축허가등의 동의 [<sup>(약정)</sup>소방시설법 제6조, 시행령 제7조]



### 건축허가등의 관련 소방시설설치 기준일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관계 법령

#####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 질의 1

-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에도 소방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게 질의하신 대상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이라면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 공장에 기숙사만 있고 공동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라 기숙사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게서 질의하신 공장에 공동취사시설이 없다면,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보기 어려워 복합건축물로 분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 이동식 전기차 충전로봇에 탑재된 배터리가 전기저장시설(ESS)에 해당 여부가 모호 합니다. 해당 배터리 용량이 20Kwh를 초과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주차장에 별도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지?

**회신 3**

→ 이동식 전기차 충전로봇(탑재된 배터리 포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발전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충전 로봇으로 인한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관계 법령

####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 질의 1

- 지하주차장에 방화셔터가 있을 경우 별도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아 거실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비고제1호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하주차장에 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 하였다고 하여 별개의 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 지상2층에 통신기기실 150m<sup>2</sup>, 전기실 130m<sup>2</sup>, 전산실 150m<sup>2</sup> 실이 각각 구획되어 있는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여부?



## 회신 2

→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방화구획의 설치에 대해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바목5)에 따라 전기실·발전실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으로 물분무등소방설비 설치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통신기, 전기실 및 전산실이 건축법에 따른 내화구조의 벽과 바닥,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하나의 실이 아니라 별개의 실로 보아야 하며, 해당 각 실의 바닥면적이 300㎡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시설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대상 및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②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 질의 1

→ 도로터널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소방시설은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확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입니다. 도로터널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을 받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 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미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비고 2.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3.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소방시설법 제11조]



####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관계 법령

#####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 ①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 질의 1

-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카트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내 전동 카트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질의 2

-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 중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에 따라 트렁크에 설치가능 여부?



## 회신 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각 호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곳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합니다. “사용하기 쉬운 곳”을 소방시설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차량 내부에 소화기의 설치공간을 확보하고, 사고 등 발생 시 소화기로 인한 2차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고, 운전자가 화재발생 시 차량용 소화기를 쉽게 찾아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차량 트렁크가 이에 해당된다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 4.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소방시설법 제15조, 시행령 제18조]



#### 임시소방시설 유지 관리 책임 관련 질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8조]

#####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질의 1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의 주체는?

####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 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주체는 건설 공사를 하는 자(공사시공자)를 의미하나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의 2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의 집행주체가 시공사이면 타 현장에서 사용한 성능상 이상이 없는 자재를 사용해도 되는지? 자재의 수량과 규격을 발주처와 상의하여 줄일 수 있는지?



## 회신 2

- 소방관계법령에서는 공사현장의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용한 임시소방시설의 재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임시소방시설은 임의로 감소하여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방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4호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첨부서류를 확인하시어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3

→ 건설현장 내 우레탄폼 시공 예정인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3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설현장에서 「동법 시행령」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을 할 경우 「동법 시행령」[별표 8](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여부와 해당 작업의 화재위험작업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한 관할 소방서로부터 안내받아 적절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4

→ 공사현장 내 절삭작업(그라인더 작업, 금속컷팅)이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는지?

### 회신 4

- 그라인더 작업 및 금속컷팅 등 절삭작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용접·용단 작업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고온의 불꽃, 불티의 비산이나 열로 인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연마나 절단작업은 인화성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높은 마찰열이나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5.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법 제16조]



### 피난방화시설등에 폐쇄, 훼손, 물건적치등 위반행위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질의 1

- 방화문에 전자출입시스템 출입통제장치 설치 가능 여부?



####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다만, 화재 또는 정전 시 방화문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자동으로 개방되거나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 소방법에 위반되는 피난시설 적치물의 범위가 있는지?

## 회신 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등을 피난시설(복도, 계단등)에 적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  
①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는 제외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법적 적치물의 허용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적치물의 정도 및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즉시시정 요구 또는 조치명령을 부과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 의료시설 소급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6]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부칙〈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 ①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8월 6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4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질의 1

- 2019년 8월 6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료시설로 되어 있는 상태 (종합병원)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건축물에 2019년 8월 7일 용도변경없이 개업하는 한방병원은 위 질의1) 부칙의 경과조치에 대하여 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건축 당시의 법을 적용하여 소방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소방시설을 하여야 한다면 현재의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회신 1

- 부칙 8조에 의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질의 2

→ 2019년 8월 6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대장에 의료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20여년 운영 하던 한방병원을 2023년 11월 폐업하고, 2024년 1월 요양병원으로 개업하고자 합니다. 관할 소방서에서는 한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의 라목 5)를 적용하여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이라고 합니다. 건축에서는 용도변경이 아닌 단순 기재사항 변경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신청 당시 소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소방에서는 기재사항 변경도 용도변경으로 인정하여 건축행위이므로 현재 소방법(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신 2

- 건축물의 기재사항 변경(표시변경)은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에 속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은 표시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따라야 하며, 의료시설로서 한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기재 사항변경(표시변경) 시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질의 3

→ 당초 한방병원이 1층, 3층, 4층, 6층, 8층을 사용하고 있었고, 지하층만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어있으며,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없습니다. 현재 그 층들을 그대로 승계받아 요양병원으로 개업하고자 하는데, 사용하는 시설바닥면적이 600㎡ 이상 이여서 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이 됩니다. [별표4]라목 5)에서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건축물 지하층 포함 전층(모든 층)을 스프링클러설비를 해야 하는지?

## 회신 3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1.라.5)에 의해 지하층 포함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4**

→ 위 질문4)가 현재의 소방시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자진 소방설비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해도 되는지요?

**회신 4**

→ 요양병원은 (답변 1)의 소급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부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1.라.5)에 의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7.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 증축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 방화셔터”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 방화문”이라 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질의 1

→ 무창층 산정시 해당층의 일부 증축부분만 계산하는 것인지 해당층 전체를 계산하는 것인지?

- 1안)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과 창면적으로 무창층 산정하면 무창층 미해당
- 2안) 지상2층 전체의 바닥면적과 창면적으로 무창층 산정하면 무창층 해당됨 → 증축 부분에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됨.



####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방화구획 등 단서조항에 해당하여도 전체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증축하는 부분에만 적용하므로, 무창층과 관련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증축여부와 별개로 층 바닥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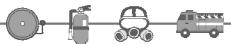
- 따라서, 질의하신 2안과 같이 증축 시 기존 부분을 포함한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무창층을 산정하시고 증축부분 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부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질의 2

-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는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의 방화구획이 아닌 구획을 위해서 방화셔터 또는 60+방화문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증축부분과 기존부분을 방화셔터로 구획시 3M이내에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꼭 설치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회신 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 방화셔터”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 방화문”이라 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방화셔터는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방화구획을 위한 방화셔터이며, 방화셔터 작동 시 피난을 위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8. [별표2] 특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 특정소방대상물 중 “군사시설”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1호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21. 교정 및 군사시설

- 사.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 질의 1

- 군부대마트를 교정 및 군사시설로 판단해야 할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균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판단해야 하는지?



#### 회신 1

- 군부대3 마트(PX)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1호사목에 국방·군사시설은 「국방·국사 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부대 마트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사목에 규정된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 시설은 특소방대상물 분류상 균린생활시설 소매점(면적 1,000m<sup>2</sup> 미만) 또는 판매시설(면적 1,000m<sup>2</sup> 이상)로 해석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질의 2**

→ 국방·군사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시설에서 간부 숙소는 어떤 용도를 적용을 해야 하는지?

**회신 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21호 사목에 따라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은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나, 질의하신 관사 및 간부숙소는 제2조제1호 사목에 해당하므로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특정소방대상물 중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및 주차장”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8호

### 관계 법령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및 기계 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 질의 1

- 해당 공작물이 소방시설법에 따른 면적, 용도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 ex) 1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지?



####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법 상 건축물을 주로 특별소방대상물로 보고 있으나, 지하구, 가스저장탱크, 전기저장시설 등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설비)과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터널(도로법) 등도 특별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높이 8m 이하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이 건축법 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며,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의 특별소방대상물 판단 관련 예외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은 동법 시행령 [별표2] 제18호에 따라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로 특별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바목 2)에 따라 연면적 800㎡ 이상인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여부 [내화구조의 벽과 바닥으로 구획]**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

**관계 법령****【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질의 1**

- 지상에 설치된 상가와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을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관통부 배관 및 트레이를 내화충전구조로 구획할 경우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 질의하신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배관, 배선등의 관통을 포함하는 개구부가 없고, 수직·수평적으로 연소확대 가능성이 없는 구조(완전구획)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해석되며 연소확대 가능성 유무 등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건축허가 동의 권한이 있는 관할 소방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9.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 소규모 숙박시설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다목1)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 질의 1

→ 소규모( $66m^2$ ) 숙박시설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외 가능여부?



####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라 숙박시설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66m^2$ ) 숙박시설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0.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4조]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 질의 1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



####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4호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서비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 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소화장치는 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11. 무창층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는 창호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호

#### 관계 법령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빙터를 향할 것
  -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질의 1

- 무창층의 프로젝트창의 경우 상부창의 개구부 인정 기준은?



####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합니다.
- 무창층 기준 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2011.03.)에 따라 프로젝트창의 경우 하부창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부창이 “④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에 해당하고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하부창 모두를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귀하게서 질의하신 그림2의 상부창은 개구부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 무창층의 개구부 면적계산의 기준은 유리창 전체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열리는 유효폭만큼만 계산하는 것인지?



## 회신 2

→ 무창층 기준 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2011.03.)에 따라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합니다. 개구부 면적은 열리는 유효폭만큼 계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1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

#### 관계 법령

별표 3(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소방대상물은 특별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별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비고

-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질의 1**

→ 2024년 12월 1일부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하는 경우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설되어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신축, 증축 등으로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가 생겨 설치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것은 이해했습니다. 작동점검, 종합점검, 최초점검 대상인지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제2호 나목 1) 영 별표 4 제1호 마목에서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작동점검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종합점검(최초점검 포함)은 같은 별표 3호 제1호 나목에서 “종합점검은 작동 점검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은 자체점검 의무가 없습니다.

**질의 2**

→ 모듈리교실이 설치되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새로 신설된 경우, 최초점검 및 자체점검 대상인지

**회신 2**

→ ‘최초점검’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고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된 대상물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작동점검’은 「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지침」(2021.8.20.)에 따라 기존 학교건물에 대한 자체점검(작동, 종합) 및 외관점검 시 병행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소방서에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교실 소방안전확보를 위함 소방청·교육부 업무협약 21.7.26.)



### 질의 3

→ 방화문에 화재 신호와 연동하여 작동되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개방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 신호 시 자동 폐쇄되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항상 닫혀있는 도어클러저의 기능만 할 경우 작동 및 종합점검 시 자동폐쇄장치의 일부 기능 상실로 인한 지적 대상이 되는지

### 회신 3

→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방화문은 감지기 작동에 따른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동폐쇄장치가 정상작동 하지 않더라도 도어클러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건축법령에서 정한 방화문의 기능을 충족한다면 지적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 다만, 특별피난계단 등의 제연설비가 설치된 대상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의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가 불량일 경우 지적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 질의 4

→ 일체형 방화셔터의 출입구 설치 위치, 문 열림 방향 등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점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바 위 개요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사항만 점검하면 되는지, 출입구 설치 위치, 열림 방향 등 (건축당시 설치 상태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의견으로 기능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에 대하여 정상 기능 적정 여부에 포함하여 점검해야 되는지

### 회신 4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 31-A-001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관리 상태(폐쇄·훼손·변경) 및 정상 기능 적정 여부”에는 피난계단에 설치된 방화문이 피난방향으로 열리는지 확인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질의 5**

→ 지하구 대상에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지설비,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방시설만 보면 특별소방대상물 3급 대상이나 지하구(통신구)로서 특별소방대상물 2급 대상입니다. 관계인이 직접 점검 할 수 있는지

**회신 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제2호 나목 1)호에 따라 간이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3급 대상)설치 대상만 관계인 점검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지하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제3호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관계인 점검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6**

→ 사용승인일이 10월인 특별소방대상물이 종합점검을 10월에 시작하여 11월에 종료해도 되는지

**회신 6**

→ 종합점검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제3호 라목 2)에 따라 ‘특별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시행시기 안내”(2017.3.6. 소방제도과 -1322) 지침에서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 점검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0월에 종합점검을 시작하여 11월에 종료되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7**

→ 사용승인일이 12월인 특별소방대상물(작동 대상)의 작동점검을 사용승인 이전 11월에 실시 가능 여부



### 회신 7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제2호 라목 2) 및 제3로 라목 2)에 따라 자체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여야 하나, 부득이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다음 연도에도 당해 연도에 자체점검을 실시한 달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8

→ 종합점검 사용승인일이 2023년 8월일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 후 자체점검(종합, 작동)은 언제 하는지



### 회신 8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비고 2호에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초점검 이후, 2024년 8월에 종합점검을, 2025년 2월에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9

→ A 근린생활시설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업무시설로 변경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자진설비로 보고 자체점검을 제외될 수 있는지, B 자동차관련 시설(자탐 대상) 이었으나, 면적 말소 연면적 944. $m^2$  변경된 경우 자진설비로 보고 자체점검 제외 할 수 있는지



### 회신 9

→ 귀하께서 질의하신 A, B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진설비로 판단되며, 자진설비는 법정설비가 아니므로 자체점검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자진설비라 하더라도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점검 실시를 권장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질의 10-1**

→ 국립대학교를 소방법 위반(자체점검 미실시)으로 입건 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10-1**

→ 국가'의 경우 과태료·벌금 부과 징수의 주체이므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벌금 처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되고, '국가기관'은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므로, 국가기관에 과태료·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국립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없고,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비법인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비송사건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바(대판 2016마5908 결정 등), 과태료 및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국립대학교가 법인격이 인정되고, 해당 학교법인이 국가와는 무관한 사인의 지위에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법인이 과태료·벌금 부과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0-2**

→ 상기 내용 관련 입건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회신 10-2**

→ 해당 기관의 상급 기관(감사부서)에 통보하여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관련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 관계법령

-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① 법 제2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면제 또는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 및 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질의 1

- 자체점검과 소방안전관리자 연기 기한을 1년 단위로 계속해야 하는지



###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2016.4.27.)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자체점검의 최장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을 바탕으로 면제나 연기 신청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상태 유지를 위해 신속히 수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함)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예시, 1년, 6개월, 3개월 가능)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관련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4

### 관계법령

####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인력인 특급점검자 1명과 보조 점검인력인 영 별표 9에 따른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점검인력으로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 인력인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점검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점검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점검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관리업자 소속의 소방기술인력으로 할 수 있다.
  - 다. 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인력인 관계인 1명과 보조 점검인력 2명을 점검인력 1 단위로 한다. 이 경우 보조 점검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 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관리업자 소속의 소방기술인력으로 할 수 있다.
6.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 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 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상호간의 좌표 최단 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 한도면적에서 뺀다.



### 질의 1

→ 2024. 12. 1. 이후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별소방대상물 기준을 보면 보조기술인력이 고급점검자 1명 이상/중급점검자 1명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1단위 점검인력 : 주된 기술인력 1 + 보조 기술인력 2 외에 추가 배치 할 수 있는 보조기술인력 2명의 경우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급점검자 이상으로 2명을 추가 배치 해야하는지

### 회신 1

→ 귀하께서 질의하신 특별소방대상물에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 경우, 중급점검자 이상으로 추가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서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이산화탄소의 호스릴방식의 경우 배치 값을 제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시설관리협회의 이 기준에 의거 하여 배치할 수 없고 이산화탄소 호스릴방식도 물분무등소화설비와 똑같은 배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소방서에는 배치신고서와 점검 보고서에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 회신 2

→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가감계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제6호 나목 2) 에서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상기조항을 준용하여 자체점검 시 가감계수는 제외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체크하고, 배치신고 시 가감계수 적용 제외를 위해서는 배치신고 시스템에서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제외 처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공동주택 세대점검) 관련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

### 관계 법령

**별표 3(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 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 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질의 1

→ 공동주택 아파트 전 세대에 하향식 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 전 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는 건축법에 따른 대피공간 대체시설이기 때문에 소방법상 화재 안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내용 중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점검해야 하는지



## 회신 1

→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향식 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로서 소방시설등에 해당되지 않아 점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시 피난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점검 시 외관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 관계 법령

####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



#### 질의 1

- 건축 설계 프리랜서(개인사업자)와 소방시설관리업 보조인력(관리업 점검자 자격 취득 후)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 회신 1

- 점검자 자격을 취득 후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에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소방기술자에 해당하며,
- 같은 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제3항에서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소방업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다른 업종과의 이중취업을 제한한 규정이며 소방 업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시킨 규정입니다.
- 따라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두 가지 업종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①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② 근무시간 외
  - ③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I

II

III

IV

V

VI

VII

VIII



##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관련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

### 관계 법령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등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li> <li>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li> </ol> 나. 보조 기술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li> <li>2)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li> <li>3)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li> </ol>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li> <li>2)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li> </ol>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비고

1.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2.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질의 1

- 소방시설관리업의 주된 기술인력에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일한 경력만 인정되는지

### 회신 1

- 소방시설관리사의 소방 관련 실무경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2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경력을 의미합니다. (소방시설관리업 경력 포함)

### 질의 2

- 24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합격자로 일반관리업 주된 기술인력 선임 및 1급, 2급, 3급 주된 점검인력 배치 가능 여부

### 회신 2

- 2024. 12. 1. 이후부터는 일반관리업은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점검 시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점검자 1명 이상” 점검이 가능합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령 제52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 부칙에 따라 “대통령령 제 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2022년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2025년 6월30일까지 경력 1년 미만의 소방시설관리사를 주된 점검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II

## 화재예방법







# 1. 화재의 예방조치 등



## 특수가연물

화재예방법 제17조, 시행령 제19조

### 관계법령

####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⑥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 ① 법 제17조 제5항에서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 ②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질의 1

→ 특수가연물 나무껍질 200,000kg (수량의 500배) + 목재가공품 5000m<sup>3</sup>(수량의 500배)를 보관하는 경우 1천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 회신 1

→ 특수가연물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는 이격 거리와 관계없이 A실(나무껍질 수량의 500배)+B실(목재가공품 수량의 500배)합산하여 1천배 이상의 특수가연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 벗짚류란 마른 벗짚, 북데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고 하며 다만 축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산용도가 아마도 목장에서 소먹이로 사용하는 건초를 의미하는 걸로 예상되는데, 목장에서 비축하는 건초 말고 목장에 팔기 위해서 창고에서 비축하는 건초도 축산용도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2

- 축산 용도로 판매하려고 창고에 저장하는 것 아닌, 가축을 기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질의 3

- 고형연료제품(SRF)를 이용하여 발전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업장입니다. 당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연료 고형연료제품(SRF)이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2의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지



## 회신 3

- 고형연료제품이란,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자원으로의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연료제품으로 「화재예방법 시행령」별표 2에 의거 가연성 고체류는 특수가연물로 분류, 고형연료제품이 인화점 등이 가연성 고체류 조건(별표 2 비고 5)에 맞는 경우 특수가연물에 해당합니다.



## 2.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예방법 제24조

#### 관계 법령

#####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질의 1

- 소방안전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도 겸직이 제한 되는지



#### 회신 1

- 「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제14조(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 제5호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험물 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에 해당함으로 특급, 1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위험물 대리자와 겸직 할 수 없습니다.

## 질의 2

-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은 1명 이상입니다. 해당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였을 때, 1명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담을 할 경우, 그 외 나머지 소방안전관리자도 겸직이 불가한지

## 회신 2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조항은”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어 화재 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기 대응능력 부재가 문제 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발생의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겸직할 수 없도록 겸직 금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따라서 추가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더라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서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 관리자와 겸할 수 없습니다.

## 질의 3

- 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소방시설을 관리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자로 현재 선임이 되어있을 시 업무대행을 위탁하여 신고를 변경하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회신 3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서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4

→ 2022년 12월 1일 이전부터 업무대행을 해오다가 2022년 12월 1일 이후 소방시설 관리업체 변경 시, 선임되어 있는 감독적 직위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대행 강습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 회신 4

→ 2022년 12월 1일 이전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감독적 직위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음으로 업무대행 강습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예방법 제24조, 시행규칙 제10조

### 관계법령

####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① 영 제25조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질의 1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대행 관련을 월 1회 이상 방문한다. or 관계인과 협의하여 2달에 1번 방문한다. 만약 법적 근거로 월 1회 이상 방문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회신 1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관리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따라 “법 제24조 제5항 제3호 및 법 제24조 제5항 제4호”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제24조 제5항 제3호 및 법 제24조 제5항 제4호를 업무대행 한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상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를 점검을 해야 함으로 월 1회 이상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업무대행 업체가 월 1회 점검을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 관련

화재예방법 제29조

### 관계법령

####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 ③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본다.



#### 질의 1

- 지하차도 공사(토목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배치기준(현 배치 기준 지하층 및 연면적 기준)은 건축에서 사용하는 연면적 기준이므로 토목공사에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배치기준과 동일 여부



#### 회신 1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연면적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6)를 준용하여 “터널 연면적 산정은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으로 계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화재예방안전진단 관련

화재예방법 제41조

### 관계법령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 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질의 1

→ 사용승인일이 3월인 종합점검 대상이 2025년 12월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2025년의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이 면제가 되는지



### 회신 1

→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 합니다.

- 따라서, 화재예방안전진단이 2025년 12월 예정인 경우는 2025년도에 실시하는 자체 점검(종합, 작동) 모두 면제가 가능합니다. (2026년은 자체점검 실시)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관련

제5조·제6조 및 민원처리법 제2조

### 관계 법령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3)·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 및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5조 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자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 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질의 1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관련 관할 소방서에서 민원 사무처리대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하는지



## 회신 1

-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민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법」제2조 제2호의 ‘민원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은 민원의 요구 주체가 아니라 민원의 상대방인 민원의 처리 주체이므로 민원인에서 제외되어 민원처리법이 적용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대장, 민원서류작성 등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III

## 다중이용업소법







# 1.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등



## 일반음식점등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관계 법령

#### 제2조(다중이용업)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  
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  
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1) 지상 1층
  -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통주점영업



#### 질의 1

→ 최근 신규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영업장에 다른 일반음식점을 하나 더 추가하여 영업  
신고를 하려고 할 때 다중이용시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지  
(내부구조 변경 전혀 없음)?



#### 회신 1

→ 귀하의 현재 영업장에 유사 및 동일 업종으로 추가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신규로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3항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1. 영업장의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이 없고, 2. 영업주가 동일하며, 3. 현행법령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기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정상작동하는 경우에는 신규 발급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영업신고를 위한 완비증명서 발급시 기존 영업장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지상1층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데 필요에 따라 지하1층을 식품저장창고로 용도변경 하였을 경우 지하1층도 영업신고시 소방완비증명을 받아야하는지?

**회신 2**

→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하1층이 지상1층 영업장 부속시설로 사용하고자 위생과에 영업 신고하였다면 소방완비증명을 발급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상1층 영업장과 연결되어(내부계단) 있지 않고 영업장 신고 면적에서 제외 되었다면 소방완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은 조리장 (통상 주방)과 화장실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전체의 바닥면적인지 아니면 제외한 영업장 (통상 홀)만의 바닥면적인지?

**회신 3**

→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은 조리장 (통상 주방)과 화장실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전체의 바닥면적임을 알려드리며, 영업장 면적 산정은 관할구청 인허가 부서 허가면적을 기초로 하고, 건축물 현황도상 공유면적(공용복도, 공용계단, 공용 화장실 등)을 제외한 영업장 면적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건축사 또는 소방설계업자가 측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관할소방서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4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건물의 2층은 사용하지 않고 1층만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안전시설 설치신고 및 완비를 해야하는지?

#### 회신 4

→ 귀하께서 질의하신 영업장의 지상1층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지상2층을 영업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상2층을 영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관할구청 위생과에 지상1층만 허가 받은 경우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질의 5

→ 영업장 면적을 건축물대장상 면적(건물계단, 엘리베이터, 건물화장실 면적 포함)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또는 실제 영업장 전용면적(공용면적 미포함)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5

→ 다중이용업소 바닥면적이란 실질적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수평투영면적)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 면적과 실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상이할 경우 실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공유면적(계단, 복도, 화장실 등)도 사실상 전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질의 6**

→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주점으로 내부변경 없이 업종을 변경하여 영업시 다중이용시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지?

**회신 6**

- 귀하의 영업장이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주점 업종으로 바꾼 후에는 신규로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기준 등) 제3항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내부시설(소방시설, 구획된실, 내장재, 인테리어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관할소방서장 판단에 따라 재교부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4.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한 경우. 다만, 내부구조 변경 등이 있거나 업종 변경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질의 7**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는 식품접객업(식당)으로서 지상 1층과 지하1층을 모두 사용하는 식당 (“다중이용업소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하면적이 66제곱미터를 넘는 식당) 이지만 해당 업소가 지상 1층만을 구청에 영업신고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지하 1층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 해당 업소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보고 “다중이용 업소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업소가 (업주가 1층만을 영업신고 하였 으므로) 지하부분을 영업신고 하지 않으므로(서류상으로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므로)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게되지 않는 것인지?

**회신 7**

- 질의하신 영업장의 다른층(지하1층)를 이용하는 경우, 관할구청 소관부서 판단에 따라 영업장 허가 면적에 포함되었다면 “다중이용업주”에 해당하고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시설등을 설치 후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2. 신종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등



### 신종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업무처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관계 법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 질의 1

→ 만화카페와 키즈카페의 경우 신규오픈시 다중이용업소가 되어 소방필증이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드게임카페는 다중이용업소나 소방필증 등이 의무라든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요?



### 회신 1

→ 귀하의 보드게임카페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질의 2

→ 인테리어 시 소방법 등을 물어보고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업체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회신 2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인터넷이나 관할소방서 웹사이트 참조하여 적법한 업체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 해당부서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3

→ 다중이용업소 키즈카페 놀이시설(정글짐) 아래부분에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해야 하는지?



### 회신 3

→ 수면이나 휴식으로 장시간 사람이 체류하는 공간이 아닌 단순한 유아 기구로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별도의 공간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제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4

→ 공간대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되는지?

#### 회신 4

→ 키즈카페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간대여업이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됩니다. 공간대여업 등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놀이터가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나목에 해당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령상의 키즈카페에 해당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3호(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의 영업소) 해당여부는 소관법령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또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업종과 상관없이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다목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령상의 키즈카페에 해당합니다.

#### 질의 5

→ 2018년도에 개업하여 운영중인 키즈카페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바뀌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신규대상에 적용되는지?

#### 회신 5

→ 귀하의 운영하는 단일 영업장이 단일 법인이며 단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신규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법 시행규칙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에 놀이기구 추가사항은 현행 법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 6. 8. 이후 ① 영업을 개시하거나 ② 영업주 변경, 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행 법령에 맞게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 완비증명서 신규 발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3. 영업장 내 안전시설등 설치 관련 질의



#### 영업장 비상구 및 주된 출입구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관계 법령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2.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이하 이 표에서 “비상구등”이라 한다)

###### 가. 공통기준

-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3) 구조

- 가) 비상구등은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不燃材料)로 구획된 부속실(전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설계된 방풍 구조는 그렇지 않다.
- 나) 비상구등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할 것.

###### 나.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2개 이상의 층에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각각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의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 2) 비상구등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3) 비상구등의 문의 재질은 가목4)나)의 기준을 따를 것
-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 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의 기준

-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 질의 1

→ 다중이용업소에 방화문을 대신하여 방화셔터에 설치된 문으로 인정 가능한지?

### 회신 1

→ 귀하의 영업장 주출입구 및 비상구 문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2. 가. 4)문 나) 문의 재질에 따라 방화문 또는 불연재 문으로 설치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방화셔터에 설치된 쪽문은 다중이용업소 주출입구에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2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전실은 천장까지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하는지?

### 회신 2

→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전실은 반자속 천장까지 불연재료로 구획 되어야 합니다.

### 질의 3

→ 부속실의 구획을 불연재료인 철, 유리로 가능한지?

### 회신 3

→ 다중이용업소 부속실 구획기준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2.비상구 가.3) 가)에 따라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속실 구획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6조에 따른 불연재료(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 등)로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 설치·구획 하였다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

- 외벽콘크리트와 함께 건축된 비상구도 구조안전확인서의 콘크리트와 일체인 노대와 피난 사다리 모두에 대해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회신 4**

- 건축물 신축 당시 허가(승인)를 받은 발코니(노대)의 경우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활하중 값을 충족하도록 구조계산서를 발급·제출하고 공사 감리, 시공검사 등을 통하여 시공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있기에, 별도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인증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질의 5**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시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양식에 '건축구조기술사' 서명을 해야하는지?

**회신 5**

- 구조안전 확인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 3서식]으로 검토자 서명란에 '건축구조기술사'로 명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 구조기술사'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제6호 등의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가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활하중 5킬로뉴턴/제곱미터 이상으로 시공하고,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코니 형태 비상구의 설치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



### 질의 6

→ 5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접이식 옥외피난계단시스템이 설치 가능한지?

### 회신 6

→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업소 5층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접이식 안전난간 및 옥외 피난계단이 소방신제품으로 인정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서 층별 용도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NFTC 301 2.1.1)

- 따라서, ‘접이식 안전난간 및 옥외 피난계단’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1)」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기구를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7

→ 1층 ~ 2층 복층구조 영업장의 내부계단이 지상까지 연결된 경우 주출입구 인정이 가능한지?

### 회신 7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2. 나. 1) 규정에 의해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시행규칙 별표2 2. 나. 4) 규정에 따라 가)건축물 주요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이거나, 나)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에 따라 귀하의 영업장의 내부계단이 지상1층 피난층까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비상구까지 영업장 장면의 길이가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되어 있다면,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복층구조의 영업장 내부계단은 주출입구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현장 여건을 따른 기존 계단의 비상구 적용 여부는 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 관할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지도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질의 8**

- 발코니형 비상구를 상대 건물주와 협의하에 인접 대지경계선을 넘어서 설치하였을 때, 완비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는지?

**회신 8**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시 유관기관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함을 알려 드리며, 인접 대지 경계선에 대한 위반사항은 상대 건축주와 협의와 별도로 관할구청 건축과에 반드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9**

- 5층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비상구가 옥상으로 통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필증 발급이 불가한지?

**회신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2에 서는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2] 2.비상구 다.1)에서는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2023. 6. 27. 안건번호 23-0377)에 따라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는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 하였을 때, 5층 영업장의 발코니에서 옥상으로 향하는 철제계단과 연결된 구조는 비상구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층 다중이용업소 비상구가 옥상으로 통하는 경우는 비상구로 부적법하므로 완비필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질의 10

→ 복층구조 영업장에 지상1층 주출입구 반대편에 비상구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1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제2호나목에 따라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이하인 경우는 비상구 제외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도면을 검토해본바 비상구 제외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도서 및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관서 다중 이용업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11

→ 다중이용업소 주출입구와 비상구 거리가 영업장 장변에 2분의 1이상 모자른 경우 임의 복도로 내부통로 구획하여 비상구 설치가 여부?

### 회신 11

→ 비상구는 「다중이용업소법」시행규칙 별표2 2에 따라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되되, 건물구조상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의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중이용업소 법령에서는 영업장 일부를 축소하여 복도 통로를 만든 후 주출입구와 비상구의 이격거리를 늘리는 것을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법에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에 관계법령을 확인하여 주시고, 그 밖에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 관할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질의 12**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출입구가 방풍실을 통하는 구조일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가능 여부?

**회신 12**

- 귀하께서 첨부하신 자료를 검토한바 건물의 공용부분으로 불연재료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이나 방풍실 구조일 경우 비상구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3) 가. 비상구등의 구조에서 “비상구등은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설계된 방풍구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상구등의 범위에는 주된 출입구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 다중이용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3**

- 지상3층에 설치된 비상구 계단 기준이 지상까지 연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하주차장 까지 연결되어야 하는지?

**회신 13**

-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 계단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지상층(피난층) 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까지 연결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교2에 보시면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관련 문의는 관할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14

→ 업소의 문을 자동유리방화문으로 할 경우 화재시 자동 미닫이 형식으로 열리는 구조 이므로 피난계단 등의 출입문(방화문)과 10~20cm 인접하여 설치하여도 방화문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영업주 등은 주장하며, 소방서에서도 이에 대한 반증을 하기 어려운데요, 이또한 열리는 간접이 없다면 방화문과 인접하게 자동유리방화문을 설치 하여도 무관한지요?

### 회신 14

→ 상기 영업장의 열리는 간접은 화재시 다중이용업소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뒤에서 미는 경우(최악의 조건)를 고려하여야 하며, 문을 열고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지를 판단 하셔야 합니다. 문의 크기와 통로폭, 넓이에 따라 수치적인 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질의 15

→ 다중이용업소 자동문설치시 수신기를 별도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15

→ 주된 출입구에 자동문(슬라이딩)을 설치하는 경우 영업장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결 된 화재감지기와 연동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감지기는 불꽃 또는 연기감지기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신기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별도로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장의 (부)수신기와 해당건축물의 (주)수신기는 연동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자동문(슬라이딩)은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①피난 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②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2. 비상구 4) 문이 열리는 방향 중 가)에서 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관계 법령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 1. 소방시설

##### 가. 소화설비

######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표에서 “화재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질의 1

→ 2층의 경우 창문이 건물 전면 3분의 2정도 차지하는 강화유리 통창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회신 1

→ 「다중이용업소법(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별표1의2 1. 가. 2) 다)에 따라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소방시설법 시행령』제2조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의미 합니다. 이때, 『소방시설법 시행령』제2조 제1호 다목 요건 충족 여부는 도로 폭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6m<10m 미만 : 2m / 10m 이상 35m 미만 : 3m / 35m 이상: 6m(읍면지역은 4m)]. 도면과 같이 6m이 도로에 인접한 영업장은 밀폐구조 영업장에서 제외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장 출입구까지 소방차 진입에 따른 현장 여건등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2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SP 또는 SP가 현재 화재안전기술,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되는가?



## 회신 2

-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므로 안전시설등 완비 발급시 현행 간이스프링클러 기준에 적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3

- 기존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등 소방시설이 법적의무 없이 자진으로 설치 되어 있는 경우, 신규 완비증명서 발급시 화재안전기술, 성능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



## 회신 3

- 자동화재탐지설비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제1항에 따라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적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4. 영업장 구획 등 관련 질의



### 영업장 구획 및 불연재료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관계 법령

#####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2. 노래연습장업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 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질의 1

- 스크린골프장과 휴게음식점 사이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 해야 하는지요?



#### 회신 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2의2. 영업장 구획 등 “총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 되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동일한 건물의 다른 용도의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으므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을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영업장과 다른 영업장 간에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영업장 소재지 관할구청 소관부서 및 관할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2

→ 다중이용업소 구획된 실 안에 별도 탈의실( $1m^3$ )을 만들고 문을 추가로 설치 가능한지?

## 회신 2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직원 휴게실의 탈의실( $1m^3$ )을 직원들만 사용하고 단순히 탈의만 하는 공간이라면 탈의실에 문을 설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질의 3

→ 청소도구 보관 및 걸레 빨래 하는 곳으로  $1m^3$  이내의 공간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 회신 3

→ 면적이  $1m^3$  이내의 청소도구 보관 공간은 구획된 실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청소도구 보관 등 장소에는 전기시설 등 화재발생요인이 없어야 하며 전용공간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질의 4

→ 다중이용업소 중 노래연습장 천장을 석고보드 9t 두장을 붙여 18t로 천장을 마감하면 불연구획으로 인정가능 한지?

## 회신 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은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연재료가 아닌 일반석고를 사용하여 영업장 내부를 구획할 수 없으며 일반석고 보드 두께가 18t 이상 되더라고 건축자재에 대한 불연등급 시험성적서가 있는 방화 석고보드만 인정 가능합니다.

**질의 5**

→ 카지노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공간의 일반음식점을 타 구역과 완전구획 해야 하는지?

**회신 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2의2. 영업장 구획 등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 되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동일한 건물의 다른 용도의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으므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을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영업장과 다른 영업장 간에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영업장 소재지 관할구청 소관부서 및 관할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6**

→ 스크린골프연습장의 별도의 구획된 실이 꼭 스크린과 영사기를 설치한 타석이 있는 구획된 실로 해석해야 하나요?

**회신 6**

→ 스크린영사기가 없어도 실의 크기와 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구획된 실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 7**

→ 구획된 실에 대한 해석이 해당 스크린골프용 타석이 있는 실만 구획된 실로 해석이 되나요? 스크린골프용 타석이 아닌 다른 용도(휴게공간, 상담실, 흡연실 등)의 실은 구획된 실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 회신 7

→ 구획된 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2 비고 제3호에 따라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휴게공간, 상담실, 흡연실은 구획된 실에 해당됩니다. 다만, 스크린골프 연습장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가 가능한 부속용도의 별도로 구획된 실이라면 관할소방서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 질의 8

→ 다중이용업소 양방향의 구획된실 문이 피난방향으로 열려야지만 150센티미터인지 아니면 양방향 구획된 실이 있지만 한쪽 방향에 문만 피난방향으로 열리면 120센티미터로도 가능한지?



## 회신 8

→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면을 검토한 바 양방향 구획된 실 중 한쪽 방향으로 출입문을 설치하면 통로폭을 120센티미터 이상 설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 따라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양 옆에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질의 9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전실 외벽이 통유리인 경우 방화석고보드로 내벽을 시공해야 하는지?



## 회신 9

→ 다중이용업소 부속실 구획기준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2.비상구 다. 1)에 따라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I

II

III

IV

V

VI

VII

VIII

같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부속실은 불연재료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벽이 통유리 불연재료로 구획(접합부 및 관통부분도 모두 불연재료로 기밀시공)하였다면 방화석고드시공은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층부 영업장의 화재위험도 및 외벽유리두께등을 고려하여 관할소방서장 판단에 따라 방화석고보드를 사용하여 보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내장식물 사용시 방염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관계 법령

####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질의 1

- 다중이용업소 만화카페 빔프로젝터 스크린이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 회신 1

- 귀하의 만화카페 영업장의 스크린은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은 “동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실내장식물)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 목재 등의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며, 일부분은 해당 면적에 따라 방염성능물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질의 2

→ 키즈카페 영업장 놀이시설의 마감재가 방염물품에 해당하는지?

### 회신 2

→ 질의하신 놀이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실내장식물)에 따라 실내장식물에 해당되지 않아 방염의무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키즈카페의 경우 실내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해서 소관부처(행정안전부)에서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방염성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3

→ 다중이용업소 내부 구획시 모든 벽체마감을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하는지?

### 회신 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제1항에 따라 다중 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다만, 벽체 너비 10센티미터 이하 목재 마감재(반자 돌림대 등)는 방염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질의 4

→ 골프스크린, 영화관등 벽체를 준불연재 쿠션으로 마감이 가능한지?

### 회신 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른 스크린골프장, 영화상영관은 “동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실내장식물)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 목재 등은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벽체 부착되는 실내장식물 쿠션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질의 5

→ 벽체전체를 인테리어상 나무를 못쓴다고 한다면, 얼마정도를 사용할 수 하는지?

### 회신 5

→ 귀하의 목재부분은 방염성능기준 이상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 면적은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 스프링클러설치시 50%)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6

→ 영업장내의 구획 된 실부분의 문, 문틀도 불연재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 회신 6

→ 각 실별 구획된 문(문틀포함)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 스프링클러설치시 50%)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7

→ 다중이용업소 설치하는 방염 현수막 설치시 방염필증, 시험성적서 등을 발행하는 인증기관 KFI, KFPI 중 어느 기관 성적서를 보유하여야 하는지?

### 회신 7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KFI(한국) 위탁기관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성능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방염성능검사성적서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8**

→ 방염성적서 발급을 목적으로 현장방염처리(방염페인트, 방염벽지, 방염액)를 하고자 할 때 소방시설업에 등록된 방염전문 업체를 통해서 방염처리 후 방염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회신 8**

→ 귀하게서 문의하신 현장방염처리는 방염업자를 선정하여 도포하시고 관할 소방서에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해서 방염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방염처리업)에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인이 자기 건물에 방염페인트 등을 칠하는 것은 성능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처리된 방염필름은 반드시 방염처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처리 방염 필름 시공 후 방염성능검사 결과 통보서와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만 있으면 됩니다.



## 5. 기타 질의사항 등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관계 법령

#####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횟수, 시기,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질의 1

- 건물 내 일반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된 영업장 중 일용직근로자를 다중이용업 교육을 시켜야하는지?

#### 회신 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다중 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영업장 종업원이 하루마다 바뀌는 일용직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 이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용직근무자가 정기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근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 다중이용업소 소방교육이 실시된다면 다중이용업주가 주체가 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진행시켜야 하는지, 소방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진행시켜야하는지?

**회신 2**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의무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질의 3**

- 매장당 수료해야 할 필수 인원 알 수 있을까요?? 대표자 포함하여 2명인지, 1명만 수료해도 되는지?

**회신 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소방안전교육)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영업장의 영업주, 종업원 중 1명으로 총 2명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근무자 변경되면 소방안전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자체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관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관계법령

####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1. 1. 5., 2023. 1. 3.>
-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질의 1

- 특정소방대상물(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내의 다중이용업소의 점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누가 하여야 하는지요?



#### 회신 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등 업무와 책임은 다중이용업주에게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주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질의 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대상이기에 3급으로 분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것이 맞는 것인가요?



## 회신 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제2호가목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은 작동점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은 작동점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시설관리는 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관계 법령

#### 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질의 1

- 기존 산후조리원의 건물 전체 층/면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3개층만 축소하여 재계약 할 경우에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 회신 1

- 귀하의 산후조리원은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으로 영업주는 상기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교육(법 제8조), 안전시설등 유지관리(법 제9조, 제11조), 정기점검 의무(법 제13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법 제13조의2)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건물의 규모에 따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보험 의무 사항은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이며, 「모자보건법」에 따른 책임보험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므로 관할구청 건축과 및 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IV

## 초고층법







# 1. 예방 및 대비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회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관계 법령

####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질의 1

- ‘본 건축물의 필지-지하 연결통로(길이70m이상)-다른 필지’를 거쳐야 지하철 역사와 연결이 되는 경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이 되어 사전재난영향성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 귀하의 건축물 필지-지하 연결통로(길이70m이상)-다른 필지'를 거쳐야 지하철 역사와 연결이 되는 경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 사업지 대지 내 건축물에 지하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고 지하공공보행통로에 접하여 상가가 있을 경우, 개인의 소유로 국가나 지자체에 등록 및 직간접 관리,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상가가 지하도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2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하공공보행통로에 접하여 있는 상가는 지하도 상가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인접건물과 대지경계를 기준으로 건물 간 맞닿아있는 형태로 지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인접건물(1-3지구)은 지하도로 및 지하역사와 연결되어있어 질의대상(1-2지구) 건축물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해당 건물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판단되는지?

 회신 3

- 직접 또는 간접 연결방식과 관계없이 지하연결통로(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형태는 구조(방화셔터 설치, 선큰 또는 외기에 개방된 구조 등)나 재료(내화구조, 불연재료 등) 등에 관계없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되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사전재난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법령 개정(24.2.14.) 및 시행(25.2.14.) 예정에 따라 법령 시행 이후에는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 거리, 바닥면적, 개방면적 및 피난계단 등 제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사전 재난영향성검토협의(사전재난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령 시행 이전까지는 시·도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사전재난영향평가)를 요청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건물 사이에 도로(도시계획시설) 등 유지관리가 중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기관의 별도의 협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4

- 지하철 역사와 A, B, C 건물이 지하보행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D, E, F건물이 C건물과 지하보행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C건물을 통해 지하철 역사와 연결 계획을 가질 경우 D, E, F 건물이 초고층 재난관리법 제2조 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이 되는지요?



#### 회신 4

- 귀하가 첨부하신 자료를 검토한바 지하철역과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C건물을 경유해서 D,E,F 건물과 연결될 경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질의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는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을 검토하는 회의로서 수용인원 줄더라도 동법 제2조 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다면,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 회신 5

→ 귀하께서 문의하신 기존 초고층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고 수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 법 제6조제4항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할 대상으로 다음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 2) 「건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 3)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 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가하는 경우
  - 4) 그 밖에 시·도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다. 기존 초고층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전재난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나, 그 외 용도 변경사항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종합방재실 및 종괄소방안전관리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관계 법령

####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防火區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밀리미터 이상의 망입(網入)유리(두께 16.3밀리미터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밀리미터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 미만의 불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제2항에 따른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附屬室)을 설치 할 것
  - 다.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라.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마.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 질의 1

-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常住)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하여 보안요원(용역업체 계약인력)이 상주 인원에 포함되는 여부?



#### 회신 1

- 귀하게서 질의하신 방재실 근무 인력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3명 이상 상주(常住-언제나 머물러 있음)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방재실 근무인원에 대한 계약형태(원소속, 용역업체)는 소방법에 명시된바 없으며, 관리주체는 방재실에 근무하는 인원을 소방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조작하고 화재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종합방재실에 상주하는 인원 3명은 상시 머물러 있는 현원으로 24시간 근무를 의미하며 총원이 아닙니다.

**질의 2**

→ 종합방재실의 상주인원이 총원 개념인지 현원 개념인지?

**회신 2**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주(常住-언제나 머물러 있음) 인력은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 다. 따라서 종합 방재실 상주인원은 현원(3명 이상)이 초기대응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3**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실 상주인원의 자격기준이 따로 있는지?

**회신 3**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상주(常住-언제나 머물러 있음) 인력은 3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주인원의 자격기준은 명시된 바 없으나, 3명 이상 상시 머물러 있는 것을 규정한 것은 유사 시 초기 대응을 위원 인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4**

→ 종합방재실에 3명이 상주하는데, 22:00 이후에 번갈아가며 휴게시간을 가져도 되는지?

**회신 4**

→ 종합방재실에 상주하는 인원 3명은 상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시 초기 대응토록 관리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5

→ 반드시 종합방재실에서 상주해야 하는지? 건물 안내데스크 등 건물 내 다른 층, 다른 위치에 있어도 되는지?



### 회신 5

→ 귀하께서 질의문에 올리신 법령과 같이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상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질의 6

→ 종합방재실 상주인원의 구체적인 업무가 있는지?



### 회신 6

→ 소방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귀하의 대상물 현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재실 근무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상주하는 5명 이상의 관계인 초기대응대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회신 7

→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구성된 초기대응대 근무방식은 상시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등 상시 영업시간 외 시간대 재난 대응은 종합방재실 상주인력(3명 이상)이 초기대응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질의 8**

→ 총괄재난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와 겸직 할 수 있는지?

**회신 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총괄재난 관리자는 다른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의 단서규정에 따라 총괄재난 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질의 9**

→ 건물 소유자인 A회사가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B회사가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회신 9**

→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의무는 관리주체로서 여기서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유자라 함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고, 관리자란 물건이나 재산의 성질을 변경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의 보존·이용 및 개량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관련은 관계인(A회사, B회사) 모두 가능함으로 협의하셔서 선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피난안전구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관계 법령

####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 1의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 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 (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 질의 1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3항각목의 선큰 설치 기준에서 지하피난안전구역의 “해당 면적”의 기준에 용도별 지하주차장과 공용부분의 면적 포함여부?



#### 회신 1

- 피난안전구역(선큰 포함) 면적 산정기준 적용 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용하고 있어 공용부분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다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퍼센트 이상’으로 적용되며 지하주차장은 해당면적에서 제외 됩니다.

**질의 2**

→ 선큰의 용도별 면적 산정 시 지하층 부분만 적용여부?

**회신 2**

→ 선큰은 지하층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으로 선큰의 용도별 면적 산정 시 지하층 부분만 적용합니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지하층 피난안전구역 또는 선큰 설치기준)

**질의 3**

→ 피난안전구역의 방독면은 “화재대피용”으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생화학 물질에 대한 제독능력을 가진 “화생방용”으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3**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방독면’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피자가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얼굴을 전체 보호할 수 있는 인증된 ‘방독면’(화재대피용) 제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 방독면은 호흡 시 유독가스 등이 호흡기관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유독가스 등을 걸러낼 수 있는지 여부는 명칭이 ‘방독면’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V

## 소방시설공사업법







## 1. 설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 소방시설공사업

제11조 설계

#### 관계 법령

##### 제11조(설계)

-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③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질의 1

##### →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 영업범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질의 : 소방시설설계업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에 설치하는 방화댐퍼 시스템(감시, 제어)설계를 할 수 있는지?



#### 회신 1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소방시설설계업 영업범위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설치되어야 하는 댐퍼에  
대한 설계는 소방시설설계업 영업(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성능 및 기술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댐퍼에  
대한 설계는 소방시설설계업 영업(업무)범위에 해당합니다.

## 2. 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 소방시설공사등

시공

#### 관계 법령

##### 제12조(시공)

-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질의 1

- 소방설비 시공업체입니다. 화재안전기준상 문제없고 법규에 문제가 없을 시에 설계 사무소에서 발행한 시방서 내용을 꼭 반영하여야 하나요?



#### 회신 1

-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설계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해당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 기준을 말합니다.(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 1.3.5 참조)

따라서, 시방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설계자가 작성한 시방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 방화문, 방화셔터 설치공사로 인한 방화문 상시 개방문제로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화재시에 폐쇄될 수 있는 구조의 소방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이 때 보통 3가지의 방식으로 소방공사를 발주하는데,

1. 발신기 및 경종 신호를 통한 방화문 도어릴리즈에 연동하여 자동폐쇄가능(관련 수신반 신설)
2. 발신기 및 경종 신호를 통한 방화문 도어릴리즈에 연동하여 자동폐쇄가능(기존 수신반 사용)
3. 방화셔터 신설로 인한 연동제어반용 소방감지기 신설 및 연동, 이 때 위 3가지 공사중 법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볼수 있는 공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회신 2

→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 중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경보설비의 일종이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공사)할 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에 맞게 설치(공사) 되어야 하며, 수신기, 증계기, 감지기, 음향장치, 시각경보장치, 발신기, 전원, 배선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자동화재탐지설비 경종 신호등을 통한 연동되는 건축 피난 방화시설(방화문 도어릴리즈에 연동, 방화셔터 신설로 인한 연동제어반용 소방감지기 신설)은 소방시설 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신호를 받아 작동되는 피난 방화시설 공사 연동부분은 공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질의 3

→ 소방시설물 관리하고 종사자입니다.

소방시설물 신축공사에서는 소방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에서 공사할 수 있습니다.

1. 구축 건물에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소방공사업이 없는 무자격 업체에서 공사할 수 있나요?
2. 건물 소방안전관리자가 보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회신 3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공사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소방대상물의 정비 및 보수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도급하여야 하며, 무등록업자 시공은 무면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건물 소방안전관리자가 긴급히 소량의 단순 교체 및 보수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자체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된 소방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합니다.

 질의 4

→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두 곳 모두에 주인력으로 겸직등록 되어있는 관리사(쌍기사 보유자)가 소방시설 설치 공사 배치기간 중에 소방시설 관리업에 따른 점검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에 따른 별칙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5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의하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공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기술자 배치 기간에는 소방시설관리업 현장에 배치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배치기준 위반(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이 적용됩니다.



#### 질의 5

→ 건물 전체 철거 시에도 소방시설(전기, 설비) 철거 별도 발주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건물 자체는 남겨두고 내부만 철거하는 공사가 아닌 건물 전체를 허물고 지대를 평탄화 하는 공사입니다.

소방시설 철거 별도 발주 없이 건축 철거에서 그대로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 회신 5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시공)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철거는 소방시설공사업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구조물해체공사업자의 업무에 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 소방시설공사업 시공

#### 관계 법령

##### 제13조(착공신고)

-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2.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질의 1

→ 공사건에 대한 소방기술자 변경신고 건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2023년 12월 01일 기존A라는 소방기술자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변경신고를 해야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지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술자 변경신청이 늦게되어 소방서에서 과태료를 받게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공사건이 공사중지인 상태라도 기술자 변경 신청을 해야하나요?



## 회신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공사업자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착공신고 후에 소방기술자의 퇴직으로 소방기술자 변경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질의 2

→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의 ‘변경일’이 질의내용의 대립되는 의견 중 갑설에 따른 변경계약일 기준인지 을설에 따른 계약시행일 기준인지?

(질의내용) 기존 착공신고된 A공사업자가 회사 내부사정으로 소방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발주처는 A공사업자를 대신할 B공사업자와 2023년 7월 25일(이하 ‘변경계약일’이라 한다)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B공사업자는 변경계약 후 투입시점 발주처 협의(동의), 현장 기술인력 구인, 장비 인수인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9월 15일부터 A공사업자와 현장에서 인수인계 및 변경이 이루어짐.(7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A공사업자가 현장에서 시공)

이와 같은 사례일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제13조제2항의 ‘변경일’이 변경계약일(계약서 작성일)인지 계약시행일(실질적으로 A와 B공사업자가 현장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날)인지 확인 바랍니다.



## 회신 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방시설공사 착수 시기를 계약일 이후 어느 시점을 명시하여 놓았거나, 변경 계약일 이후에도 기존 업체(A공사업자)가 실제 소방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확인되고, B공사업자는 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변경일은 B공사업자가 실제 공사를 시작한 날(인수인계가 이루어진 날)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 3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에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됐는데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는다면 발주자도 공사 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 소방착공신고서 지급보증란에 계약이행미보증란 체크와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7번 항목에 계약이행보증금란을 삭제하고 제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소방 표준도급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금란이 있으니 계약이행보증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3

-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4 제2항에 따른 소규모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 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의 소방시설공사) 외에는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이행보증(수급인), 공사대금 지급 보증 또는 담보 제공 등(발주자)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2항에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소방 시설공사 착공신고서 작성시 “계약이행미보증”에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한 권장사항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질의 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호를 보면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1. 이것으로 보면 제연겸용 공조설비의 제연덕트의 시공은 기계설비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기계설비공사업이 시공하는 제연설비는 소방착공신고에서 제외된다면 따로 착공신고 없이 시공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한다고 착공신고를 안해도 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 회신 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서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 시공자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자가 시공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은 해당 법에서 규정한 도급 방법이 적용되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소방시설과 겸용하는 시설의 설계와 감리는 소방시설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4.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소방시설공사업 시공

#### 관계 법령

##### 제14조(완공검사)

-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나 제2항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질의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는 소방공사를 마쳤을 때에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처리 절차는 신청인이 보고서 작성하여 처리기관 (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접수 후 보고서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순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이 접수 전 서류를 반려하거나 접수의 거부 또는 접수의 지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1의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민원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1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반려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으며,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5.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20조]



### 소방시설공사업 감리

#### 관계 법령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 질의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다수 소방설비의 개설일 경우 감리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개설의 의미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 경계구역이 추가되어 회로 증설일 경우 감리대상이 아니라고 소방청에서 말하는데 어디까지가 개설인가요?

수신반 교체, 수신기는 회로는 그대로인데 전총 리모델링으로 인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다시 설치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개설인가요?

#### 회신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개설”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에 있어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를 P형에서 R형으로 변경 또는 스프링클러 유수검지장치 종류를 습식에서 준비작동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개설에 해당하지만, 새것으로 단순 교체하는 것은 정비로 판단되며, 전총 또는 일부총의 리모델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철거 후 다시 설치하는 경우는 개설에 해당합니다.



## 질의 2

- 소방감리 현장에 감리자 지정신고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배치기준 이외에 추가로 감리원을 배치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최소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한 것으로 법정 인원을 초과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치된 모든 감리원은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상주 공사감리 현장은 배치된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가된 감리원을 중도 해임하여 공사현장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질의 3

- 길이 약 940m의 4차선 지하차도 공사에 소방감리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배치 인원 및 등급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터널은 연면적 계산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4차로 이상일 경우, 터널길이 \* 7m를 연면적으로 계산하여 감리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신 3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6)에 따라 터널 연면적 산정은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으로 감리원을 배치합니다. 여기서, “평균 폭” 이란 바닥면적 폭의 평균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4

→ 소방감리원 변경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현재 업무시설(변전소) 신축 공사중인 현장에 소방감리원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소방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질병)으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감리원을 변경해야하는데, 변경할 감리원이 이전에 선임된 감리원의 자격요건에서 동등이상으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만 맞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감리원 배치 기준은 ‘고급’인데 선임은 ‘특급’으로 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감리원의 등급을 ‘고급’으로 하향하여 변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회신 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 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급감리원 이상 배치대상에 특급감리원을 배치하고, 교체시 동일 등급 감리원 배치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 사항으로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해당하며, 법령에 적합하게 고급감리원 이상 배치하면 됩니다.

 질의 5

→ 법적 소방감리의 <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에서는 소화배관에 2시간 이상의 수압 시험을 실시하여 배관의 연결부위의 누설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 수계소화설비의 성능시험표(온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소화설비)에서는 배관의 연결부위 누설여부를 (수압시험)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압시험 가능 여부?



## 회신 5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5호서식] 3. 옥내소화전설비 성능시험 조사표 수압시험

가압송수장치 및 부속장치(밸브류·배관·배관부속류·압력챔버)의 수압시험(접속상태에서 실시한다. 이하 같다)결과 등. 이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시험은 수압시험으로 하되 공사 진행 중 부분 배관 별로 기압시험은 가능하지만, 수압시험을 기압시험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질의 6

- 당 현장은 설계사의 실시설계에 따라 계단실의 방화문 설계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의거 방화문의 개폐방향이 계단실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황2) 단, 방화문의 도어락의 잠금장치가 있어 화재시 계단실 방향으로 탈출은 가능 (도어가 잠긴상태에서도 탈출가능)하나 방화문 잠금시 계단에서 거실방향으로 진입은 불가합니다.

현황3) 당 현장의 소방감리는 화재시 소방관의 실내 진입을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도어락의 설치가 위법한 사항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문1) 소방감리의 의견(현황3)에 대한 법적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 인가요?

문2) 현재 많은 건축물 계단실의 방화문에 잠금장치가 있는 도어락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위법한 것인지요?

문3) 소방감리의 업무범위는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에 해당되는데 건축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권한(준공거부)과 책임(건축법에 대한 검측업무 혹은 건축법 위법사항 적발시 소방감리원 처벌)이 있는지요?

문4) 건축법에 관련된 업무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관련된 건축감리업무 (예:방화문 자재승인 및 검측 등)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I

II

III

IV

V

VI

VII

VIII

**회신 6**

→ (답변 1,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방화문의 구조에 대하여는 소방관련 법규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방화문의 구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3, 4)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9항제1호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건축 분야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건축공사감리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감리 업무범위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41. 기타 사항(방화·피난시설 등)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방화문에 대한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인지 여부 등 확인 사항은 소방감리업무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방화문은 건축시공에 대한 건축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며, 여기에 피난 통로 상의 출입구 방화문은 소방감리업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소방감리자가 통로상의 방화문 부설시공에 대해서는 건축감리자에게 알려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방감리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방화문 자재승인 및 검측 등 업무는 건축감리자의 전담업무에 해당합니다.

**질의 7**

→ 감리일지의 비치와 관련 궁금증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제3항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에서 감리일지를 보통 컴퓨터로 작성시 출력물로 인쇄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나 혹 출력물로 인쇄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 비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회신 7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3항에서 “감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배치된 소속 감리원은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감리일지 비치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컴퓨터에 감리일지를 기록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6.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2조]



### 소방시설공사등

도급, 도급의 원칙등, 하도급 제21조~제22조

#### 관계 법령

##### 제21조(공사의 도급)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 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 관계 법령

#####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 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관계 법령

##### 제22조(하도급의 제한)

-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 질의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분리발주 정책에 따라 건설업 면허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가 건축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도급받았을 경우(계약서 별도작성)에도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업과 건설업등과 함께하는 사업자(법인)가 분리도급 예외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착공신고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받은 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 질의 2

→ 이전에 A소방업체가 배관공사를 계약 후 A소방공사업체에 관리자가 공사관리하면서 B플랜트 배관업체에 배관 공사를 시키면 하도급위반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럼 아래의 사항은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1. A소방업체가 B플랜트배관업체에 일부 배관 공사를 시킨 경우
2. A소방업체가 일용직 배관공을 공사에 시킨 경우
3. A소방업체가 개인사업자(3~5명으로 이루어진 배관 공사팀)에게 공사를 시킨 경우
4. 만약 위 3가지 모두 하도급에 해당된다면 소방배관 공사를 위한 작업 중 비계 설치 작업, 도장작업도 타업체 시키지 못하고 A소방업체 직원이 모든작업을 해야 합니까?



## 회신 2

→ (답변 1 ~ 3)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말하고, 고용인력은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방기술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경우 소방공사업체가 최소기준의 주인력과 보조인력을 갖춘 상태에서 공사일정에 따라 일당 인부를 직접 고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배관공사업체가 고용인력을 제공하는 업체라면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계설치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도급, 하도급 적용을 받지 않으며, 소방시설공사를 위한 가설시설로 건설산업기본법의 비계공사에 해당하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도 건설업 면허없이 가능합니다. 경미한 비계공사는 직접하거나 비계공사업체를 통해 공사할 수 있습니다.



## 질의 3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2조 소방시설 하도급제한 법이 2020. 6. 9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이전 소방설계 계약이 하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중 동일건 소방설계 설계변경(추가용역)이 발생되어 계약 예정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하도급 가능하지요?



### 회신 3

→ 소방시설 설계 하도급 제한규정 제정 전에 체결계약 유효 여부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부칙 제6조(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2021. 6. 10일 이후 도급계약 체결시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 6. 9일 이전에 설계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후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7.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 소방시설공사등 도급

#### 관계법령

#####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 감리 용역 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질의 1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4. 1. 4.] [소방청고시 제2023-56호, 2024. 1. 4., 일부개정]

[별표 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2호 관련) 비고 2에 <예시> 중 수행중인 실적에 대한 평가 관련입니다

1) 기준 : 수행실적:  $\{ \text{최근 } 3\text{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times (\text{이행비율} \times \text{환산율}) \div \text{전체 공사기간} \} \times \text{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2) 적용 : 진행중인 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times$  공동도급 참여비율  $\times$  기성실적(비율)  $\times$  환산비율(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

(질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소방) 모집 공고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시 기준과 다르게 기성실적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혼선이 많은 관계로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과 다른 별첨 서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만약, 기준과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면 지자체에 이와 관련한 공문 발송을 요청드립니다.

\* 현재 진행중이 모집공고 2건을 첨부하오니, 별첨 서식 중 “소방공사(감리)용역수행 실적” 하단 [※ 진행중인 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기성실적(비율) x 환산비율]을 확인바랍니다



### 회신 1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추가 기성실적(비율) 적용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수행 중인 경우는 기성 건설사업관리비를 적용하여 기성실적만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르면, 진행 중인 실적에 대하여 기성실적만을 확인하고 인정하는게 아니며, 실제 감리를 수행한 기간과 전체 공사감리비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업체마다 기성금액을 받는 시기가 다르며, 미리 선금을 받거나 기성 금액을 앞당겨서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여 입찰 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제2호 [별표 2] 제1호 비고 제2호다목의 예시에 따라 수행실적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공사감리 수행기간/전체 공사기간을 통하여 기성실적(비율)을 적용한 것에 재차 기성실적(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세부평가기준에 대해 잘 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등이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도록 한 것은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100%, 기타 다른 공사인 경우 80%를 적용하여 유사용역에 대하여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환산비율을 전체감리 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러한 비율에 기성실적 비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기성실적 비율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적절한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세부평가기준의 예시에 따라 “이행비율”은 공동도급 시 지분비율을 의미하며, “환산비율”은 공고하는 용역과 얼마나 유사한지 비율을 의미하고, “기성비율”은 전체 공사기간 중 실제 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말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질의 2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 소방청고시 제2020-16호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소방시설 설계용역 계약시 소방청고시 제2020-16호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여성기업과의 1인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회신 2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소방시설의 설계, 공사감리용역 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3

→ 소방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업무중첩도 2) 해당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적용

영 별표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 업무중첩도는 규칙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유권해석요청: 1. 당해현장포함-새로발주하는공사라는 말인데 소방시설업조합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입력도 안 했는데 중첩도 개소포함 한다는 기준하고 모순이 되는것 같은데 이에 대해 유권해석 부탁합니다.



### 회신 3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제1호마목의 업무 중첩도 평가항목 중 일반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현장(새로 발주하는 공사)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는 업무중첩도가 높아지게 되면 당해 현장에 업무 집중도가 그만큼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 발주하는 공사가 당해 공사와 중첩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질의 4

→ 신청인은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입니다.

당 조합은 2008.12.03.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획득했으나 조합의 내분으로 인한 소송전으로 사업진행이 많이 지체된 사업장입니다.

최초 사업시행인가된 2,002세대 건축계획을 2,550세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신청을 2024.05.29. 하여 관할구청에서 관련 기관 부처와 행정협의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 조합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은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획득하고 관리처분 및 이주철거를 완료 후 착공 직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가 2025.01.31부터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아닌 관할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소방감리업자 선정을 개정된 이 법 시행 이전에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있어 질의합니다.



### 회신 4

→ 소방시설공사업법 부칙 <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12.03.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이후 변경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으로 감리자 도급 계약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8.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 소방기술자

소방기술자의 의무

#### 관계 법령

#####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질의 1

- 현재 소방공사업체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숙박업소 3급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려 합니다. 해당 지역 소방서 예방과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 회신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나,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이중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방기술자가 일반적인 근무시간(09:00~18:00)에 다른 사업장(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취업한 경우 이중취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본인 건물로 취업이 전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태만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9.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 소방기술자

소방기술 경력 인정

관계 법령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 질의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중

1. 공통기준 “다”의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중
  -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 나) 소방시설 착공·감리·완공검사 관련 업무
  -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관련 업무
  - 바)항의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 감독 관련 업무의 사항에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가 포함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 회신 1

→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제1항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법 제6조제10호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소방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1. 공통기준 “다”의 2) 바)호에서 정하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 개선 및 지도, 감독 관련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별표4의 제1호 다목 2)]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질의] 1. 2007년 3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전 및 초기의 경우 관할 구역 소방파출소(현. 119안전센터) 민원업무 담당자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방염) 등의 설치 완공 여부를 현장 확인후 완비증명서를 발급 하였습니다(소방본부의 경우) 그 당시 소방파출소 민원담당자의 경우 위 해당업무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를 적용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04.5.30.] [법률 제6895호, 2003.5.29. 제정]이 제정 시행 이전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정기소방 검사.조사 및 특별소방점검 등을 관할 소방파출소(현, 119안전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소방파출소 근무자의 경우 위 해당업무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 안전조사 관련 업무』를 적용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1990년초 소방본부의 경우 각 소방서에는 소방과(소방계, 장비계), 방호과(방호계, 예방계) 2개과에서 소방행정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방일반업무를 1명의 담당자가 “소방대상물 년간 소방검사(특별 소방점검 포함) 기본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소방대상물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화재안전대책 기본 계획 수립”,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대책 수립”, “소방안전홍보 및 언론보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예방일반업무 담당자의 경우 위 해당업무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관련 업무』를 적용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2

→ (답변 1 ~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제1호다목2)에서 소방공무원으로서 “완비증명서 발급,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를 119안전센터에서 화재출동과 민원업무 병행이 아닌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19안전센터에서 소방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한 경우에는 소방기술과 관련한 경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담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경력 확인을 받아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 3)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관련 업무란, 해당 예방업무와 관련된 제도개선 담당자 및 예방업무 담당자의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업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VI

## 화재안전기준(기계)







# 1. 옥내소화전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수원 관련 질의

### 관계법령

2.1.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 \text{ m}^3$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질의 1

→ 기준에 옥내소화전 4개를 기준으로 토출량의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철거 후 설치 시 기준개수 4개로 토출량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화재안전기술 기준에 맞는 2개를 기준으로 토출량을 선정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 회신 1

→ NFTC 102 2.1.1 에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 \text{ m}^3$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1.5.2 에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산정 및 가압송수장치의 유량을 현행 기준에 맞게 2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변경된 기준개수 반영시 펌프의 토출량 및 방수 압력, 배관 구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 2**

- 공동주택 모든 동 옥상에 옥상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NFTC 102 2.1.3 에 “옥상수조(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별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별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별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과 같이 모든 동에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옥상수조를 설치하였다면 하나의 동에만 옥상수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3**

- 소화펌프의 NPSH<sub>re</sub>(필요흡입수두)가 1.7m 일 때, 유효 소화용수의 시작점을 어디로 볼 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 3**

- 화재안전기준에는 유효수량의 최저위치 레벨에 대한 법적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풋밸브의 밑부분 여과장치에서 개폐되는 시트면을 기준으로 유효수량의 최저위치 레벨을 정하나, 일본의 경우는 풋밸브에서 취수하는 경우 순간적인 와류에 의해 발생되는 공기를 흡입하지 않기 위하여 흡입배관 관경의 1.65배를 감한 높이를 유효수량의 최저위치로 적용합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펌프의 NPSH<sub>av</sub>(유효흡입수두)가 6m 정도로 NPSH<sub>re</sub>(필요 흡입수두)가 1.7m로 펌프의 NPSH<sub>av</sub> 가 충분하며 와류(소용돌이) 방지판을 설치 하였기 때문에 풋밸브의 밑부분 여과장치에서 개폐되는 시트면 기준으로 유효수량의 최저위치 레벨을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특별소방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특별소방대상물을 종합적으로 검토 가능한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옥내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 관련 질의

### 관계법령

- 2.2.1.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이 0.7 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2.2.1.14.1 내연기관의 기동은 2.2.1.9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질의 1

→ 호스릴소화전의 최소방수압력과 방수량은 옥내소화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최대방수압력은 별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최대방수압력의 경우에도 옥내소화전과 동일하게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제한이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신 1

→ NFTC 102 2.2.1.3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 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이는 소방대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반발력이 0.7 MPa가 됨에 따라 소화전의 노즐 방사압력을 0.7 MPa이하로 제한하며, 방수 압력이 0.7 MPa이상의 경우에는 감압장치 등에 의한 방법으로 감압으로 소화인력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최대방수압력도 옥내소화전 최대방수압력과 동일 하다고 해석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질의 2**

- 기존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로 교체 가능 여부?

**회신 2**

- NFTC 102 2.1.1 수원 확보 기준 등 옥내소화전설비와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반면, 배관구경 등 두 설비가 상이한 기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펌프의 양정 계산시 일반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와 호스릴의 마찰손실수두는 다릅니다.
- 따라서, 기존 옥내소화전설비를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로 교체는 가능하나 노즐선단 방수압력 등이 NFTC 10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지침하여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옥내소화전 함에서 주펌프 기동시 펌프 기동표시등 점등됩니다. 예비펌프도 주펌프와 같이 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3**

- NFTC 102 2.2.1.14.1에 “내연기관의 기동은 2.2.1.9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2.4.3.2에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옥내소화전설비의 예비펌프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옥내소화전설비 배관 관련 질의

### 관계법령

- 1.7.1.11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
- (1)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 (2)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 2.3.5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옥내 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2.3.11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 질의 1

- 배관재에 홀 타공을 한 후 그 홀 타공한부분에 KFI인증등을 받은 배관이음쇠를 사용하지 않고 가지배관등을 바로 홀 타공한 부분에 연결(용접)하여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 회신 1

- 현장에서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배관자재 중 배관이음쇠인 Tee 대신에 배관을 확관하거나 또는 인발하는 등의 가공으로 가공티(일명 티뽑기)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가공 티도 사용하지 않고 배관에 용접으로 직접 구멍을 뚫어서 관을 접속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화재안전기준이 개정(2021.12.16.)됨에 따라 확관형 분기배관의 경우 이를 허용하되 반드시 공인기관에서 성능인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하여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의 경우 배관의

측면에 분기 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국·내외 인증을 받은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경우 사용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장에서 배관 자체에 용접으로 구멍을 뚫어서 배관을 직접 접속하는 경우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질의 2

- 비획관형 분기배관에 사용되는 배관 이음쇠인데, KFI 성능인증품을 적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 회신 2

- NFTC 103 2.3.1 에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2.3.12 에 “획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의 ‘이음쇠’ 등이 비획관형 분기배관의 경우 KFI 성능인증제품 사용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화재안전기준이 개정(2021.12.16.)됨에 따라 비획관형 분기 배관은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또한, 배관이음쇠는 NFTC 102 2.3.1 에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 ”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질의 3

- 옥내소화전 주배관 구경마다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의 기준이 있나요? 만약 소화전 수량에 따른 주배관 구경의 기준이 있다면 법령과 설치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배관에 주배관을 연결하여 작업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3

- NFTC 102 2.3.5 에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mm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mm)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관경계산식으로부터 산출된 크기에 여유율을 반영한 규약배관 방식이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 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1권, 223p)에 따르면 소화전 1개 주배관 구경 50mm, 소화전 2개 주배관 구경 65mm입니다.
- 또한 NFTC 102 2.3.5 에 “~,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mm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mm)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지배관은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배관으로 가지배관에 주배관을 연결하여 작업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4

-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는 유속을 계산하여 배관 구경 50mm에는 최대 옥내소화전 2개 까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21년 4월 개정된 화재안전기준(NFTC 102)에서는 수원 및 펌프 토출량을 2개 이상은 2개로 계산 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50mm 배관에 옥내소화전 3개 이상도 연결할 수 있는 건지요?



### 회신 4

- NFTC 102 에서 기준개수가 5개에서 2개로 변경 되었으므로 2020년도 국가화재 안전기준 해설서(1권 223p)의 규약배관 방식 중 소화전 최대 2개까지 기준으로 설치 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화전 3개일 경우 주배관구경 65mm, 가지배관 구경 50mm로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5

→ 지하층(주차장 등)으로서 배관이 노출되어 있으며, 적색이 아닌 다른색으로 설치하고 타 설비와 쉽게 구분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적색 등으로 표시할 경우 가능한지?

회신 5

→ NFTC 102 2.3.11에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냉·난방 및 위생설비 등 건축설비의 고장수리 및 정비가 요구될 경우 배관의 폐쇄 등 작업자의 실수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야기될 수 있는 초기 대응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타 설비와의 구분으로 항상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배관이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누구나 소화배관임을 구분 가능하도록 표시한 경우 관할 소방서 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관련 질의

### 관계 법령

2.4.2.1 특별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별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 2.8 방수구의 설치제외

2.8.1 불연재료로 된 특별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 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8.1.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2.8.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2.8.1.3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2.8.1.4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8.1.5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질의 1

→ 옥내소화전설비 수평거리는 건축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하는지, 외벽 기준으로 하는지?



### 회신 1

→ NFTC 102 2.4.2.1 에 옥내소화전방수구는 “특별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별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옥내소화전방수구 포용거리는 수평거리 이므로 설계 시에는 반경25m 이내에 전 건물이 포용되도록 배치하고 ~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별소방대상물이 각 부분으로부터, 전 건물이 포용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므로 옥내소화전설비 수평거리는 건축물의 외벽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질의 2**

- 2층에 별도의 계단으로만 이동하는 작은 규모 (12 X 8m) 의 거실에도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2**

- NFTC 102 2.4.2.1 에 옥내소화전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법 상 “층”에 해당될 경우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전기실 및 MCC실에 수평거리 25m 반경이 부족할 경우 전기실에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 해야 하는지?

**회신 3**

- NFTC 102 2.4.2.1 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2.8.1.3 에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라고 방수구의 설치제외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전기시설은 물에 의한 감전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315p 참조)

→ 따라서, 전기설비와 물의 반응성으로 인해 방수구가 면제되는 규정이므로 구획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는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수평거리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것 판단됩니다.(‘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이외의 각 부분은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방수구 설치 및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설치 여부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4

- 지하주차장 회전구간에 옥내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 파손이 잦아 이전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 회신 4

- NFTC 102 2.4.2.1 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소방대상물 각 부분이 옥내소화전 방수구로부터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될 때에는 이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방수구 이설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물 구조 및 방수구 수평거리 등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련 도면 지참 후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옥내소화전설비 기타 질의

### 관계법령

- 2.3.9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 2.3.10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 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2.6.2.4 수조 또는 물울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2.6.2.5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2) 수조 또는 물울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 (3) 2.3.10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4)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질의 1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수조에 수원 확보를 위하여 자동으로 급수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화수조의 수원 확보만 되었다면 자동으로 급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회신 1

- NFTC 102 에 수조의 상수도를 연결한 자동급수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NFTC 102 2.6.2.4 에 “수조 또는 물울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이라고 감시제어반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수도와 연결하는 등 자동급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정수원을 확보한 수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저수위 경보가 발하는 즉시 수조에 보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법적 수원을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질의 2

→ 배관 보온재를 두르는 커버용 테이프는, 보온재 난연성능 시험기준과 관계가 없는지 아니면, 보온재 난연성능 시험과 동일한 시험에 합격한 합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2

→ NFTC 102 2.3.9 에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방용 배관보온재의 난연재료 성능은 2021.02.19. 개정된 건설기준코드 보온 공사 표준시방서(이하 KCS 31 20 05) 따르도록 합니다.

→ 따라서, 소방용 배관 보온재는 KCS 31 20 05 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관 보온재를 두르는 커버용 테이프 역시 KCS 31 20 05 에 적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질의 3

→ 옥내소화전설비의 급수배관의 개폐밸브에는 탬퍼스위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 회신 3

→ NFTC 102 2.3.10 에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 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6.2.5 에 감시제어반 기능 중 “(3) 2.3.10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을 위한 탬퍼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4**

- 옥내소화전 유지관리 시 관창은 개방상태인지, 폐쇄상태인지 법령이나 지침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4**

- 옥내소화전 관창의 개방·폐쇄 상태와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 다만 관창을 개방하여 관리한다면, 화재 시 관창을 잡은 사람이 가압수가 바로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가압수가 방수되어 근처에 있는 사람 및 시설물에 원치않는 방수가 되어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관창은 항상 폐쇄된 상태로 관리하시기 바라며 물에 젖은 호스 등을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 후 건조하여 재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2.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관련 질의

#### 관계 법령

- 2.3.1.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 2.5.2 2.5.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5.2.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5.2.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2.5.2.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 2.5.10.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mm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해야 한다.
- 2.5.10.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 질의 1

- 콘크리트 슬라브 하부에 난연성 재질의 건축단열재(경질우레탄)가 부착되어 있고, 반자를 불연재(석고보드 9.5t)를 설치 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신 1

- NFTC 103 2.5.2 에 “2.5.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5.2.3에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의 “천장”이란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하며, 천장 하단에 부착된 단열재는 천장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천장의 재질이 콘크리트라면 그 하단에 단열재가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불연재로 취급되며, 천장 및 반자의 재질이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이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 주거형 오피스텔 세대 욕실 천정 반자 내부에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신 2

- NFTC 103 2.5.2.3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상시 습한 장소로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반자를 시공하나 화기 취급이 없고 샤워시설 등이 있어 화재위험성이 대체적으로 낮은 공간(헤드 및 감지기 설치 제외 가능 장소)이며,
- NFTC 608 2.3.1.2 에 “아파트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동주택 세대와 매우 유사한 구조인 경우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 등을 지참하여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3

- 청소구 교차배관 하부분기가 아닌 측면분기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3

- NFTC 103 2.5.10.2에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mm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차배관 상 퇴적된 이물질을 청소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며, “측면분기”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배관 내 퇴적된 이물질이 모두 청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질문의 측면분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4

- 루프형 수평주행배관의 경우 교차배관의 말단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알람밸브 / 프리액션밸브 직상부 드레인 배관을 이용하여 필요 시 배관내의 물을 퇴수 시키는 방법도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 회신 4

- NFTC 103 2.5.10.2에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mm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구의 설치 목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게 되는 슬러지와 같은 이물질이 헤드의 방수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질문의 루프형 배관방식의 경우 가지배관 사이에 두 개의 교차배관이 설치되는 배관방식이므로 가지배관 및 교차배관의 이물질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청소구는 각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는 배관의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한 교차배관의 한쪽 끝 또는 양쪽 끝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5**

-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는 기준은?

 **회신 5**

- NFTC 103 2.5.10.3에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화용수로서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소화수가 수조로부터 배관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통하여 방사될 때 스프링클러헤드의 오리피스에 장애를 일으키는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NFTC 103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화수조와 생활용수수조 겸용 사용, 년 2회 이상 수조내부의 청소, 수조의 수질관리를 위한 별도의 정수장치 설치 등의 방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2.5.10.3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접합한 관리 방법은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6**

- 송수구와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배관과의 연결 방법으로 알람밸브 1차측에도 연결가능한지, 아니면 2차측에 연결해야 하는지? 송수구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배관과의 연결 방법으로 프리액션밸브 1차측에도 연결가능한지, 아니면 2차측에 연결해야 하는지?

 **회신 6**

- NFTC 103 2.3.1.5 에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송수구를 통하여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소화수는 유수검지장치 1차측 또는 2차측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유수검지장치 자체의 불량 또는 교차회로 감지기에 의해 개방되는 유수검지장치의 경우 솔레노이드밸브 미개방 우려 등으로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접속하는 것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 또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에 “주차장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송수구는 밸브 폐쇄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한 미개방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 연결되도록 하되, 하나의 송수구와 연결되는 방호구역은 5개 이하로 하고, 주차장이 다수의 층인 경우 송수구는 층별로 설치할 것을 권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질의 7

- 수평주형배관 말단에 수격방지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7

- 수격작용(水擊作用, Water hammer)이란 “유체가 배관 내를 흐르다가 펌프의 갑작스런 정지나 밸브의 급속한 차단 등으로 갑자기 정지하게 되면, 되돌아 나오려는 힘과 계속적으로 흐르는 힘이 맞부딪힐 때 충격파가 발생하며 굉음과 커다란 진동을 수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 충격파 발생으로 배관 및 밸브 등을 진동시켜 누수나 손상을 주게 되어 설비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 2차측 배관 끝,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 끝 등에 설치되고 있으나, NFTC 103에서는 수격방지기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수격방지기 설치 여부는 배관 및 밸브 등의 진동에 의한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자가 수격발생 상황을 수리학적으로 기술검토 후 적용하여야 할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에 관한 질의

### 관계 법령

- 2.1.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2.1.1.1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 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설치 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  $m^2$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7.1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 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 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 2.7.3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의 기준과 같이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7.7.1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cm 이상으로 한다.
- 2.7.8 2.7.7.2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 2.7.8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cm 이하로 할 수 있다.



### 질의 1

- 물류창고에 컨테이너를 비치하고 직원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컨테이너 내부에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회신 1

- NFTC 103 2.7.3 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의 기준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방호구역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유효살수반경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컨테이너가 사람이 출입하며 이용하는 실(室)의 개념인 공간에는 스프링클러헤드 및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및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혀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에 헤드 및 감지기 설치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2

→ 지하1층 천장 보의 폭이 1.2m이며 깊이가 450mm입니다. 위 기준에 근거하여 보의 폭이 1.2m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나, 뿐칠(10mm내외)을 할 경우에는 보의 폭이 1.2m를 초과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기존 설치되는 헤드외에 추가로 보의 하부에도 헤드를 추가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 회신 2

→ NFTC 2.7.1 에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 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 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덕트가 1.2m 초과할 경우 헤드 개방이나 살수장애로 인해 별도의 방호 공간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 상기 기준의 폭에 대한 규정은 재질에 따른 기준이 아니며, 살수장애 및 방호공간 설정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살수장애 등에 영향을 주는 마감재(뿐칠)까지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마감재까지의 폭이 1.2m 초과 시 보 하부에 추가로 헤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및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헤드설치 시 살수장애, 효용성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혀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 바랍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질의 3**

- 보의 폭이 1.2m 초과하는 경우 보의 하부에 헤드를 추가설치 하도록 하였는데 이 때 보의 폭 측정시 1.2m 기준이 단열재를 포함한 것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열재를 제외한 건축물 구조체의 폭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3**

- NFTC 103 2.7.1 에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 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 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의 높이 또는 폭에 대한 규정은 재질에 따른 기준이 아니며, 살수장애 및 방호공간 설정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보의 폭 설정 시 살수장애 등에 영향을 주는 마감단열재까지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4**

- 사무실 공간 내 새로운 칸막이 벽체를 설치할 경우, 신규 칸막이를 “천장으로부터 60cm 이상 띄어진 (벽체의 상단부가 트여져 있는) 칸막이 벽체”로 설치할 경우에 기존 스프링클러헤드 살수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신규 탈의실 내 추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4**

- 새로운 칸막이 벽체를 설치할 경우 헤드에서 방사된 물이 새로운 칸막이 벽체에 부딪혀 탈의실 부분으로 물이 넘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여(살수장애가 발생) 탈의실 부분에 헤드를 추가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581P “장애물의 살수장애구역 예” 참고바랍니다.)
- 다만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없어 답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설치 여부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5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9.2에 의거하여 기계실 같은 천장(텍스 등)이 없는 장소의 경우 헤드를 상하향식으로 설치할 경우 기준은?

### 회신 5

- NFTC 103 2.5.9.2에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천장이 없는 장소의 상하향식으로 설치할 경우 상향식헤드 합계 8개의 헤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NFTC 103 표 2.5.3.3 “가”의 경우 상향형이나 하향형으로 설치된 경우 적용하는 기준으로, 주차장이나 기계실 등과 같은 장소에 반자가 없이 살수장애 문제로 인하여 헤드를 상하형으로 병설하는 경우 “가”를 적용합니다.

### 질의 6

- 시스템 에어컨은 실제로 헤드의 방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간 확보를 해야 하나요?

### 회신 6

- NFTC 103 2.7.7.1에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球)를 이등분한 반구의 원중심에 헤드가 있다고 할 경우 헤드로부터 반구까지의 모든 거리가 60cm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반자 등 헤드 부착면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 된 설비 및 장치의 경우 헤드의 살수패턴을 고려(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술 해설서 1권 581페이지 참조)하여 살수 장애가 아닌 범위에 위치하고 있다면 살수장애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질문의 시스템에어컨 규격 및 위치와 현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살수 패턴 자료를 토대로 살수장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관할소방서와 협의 후 설계 반영 바랍니다.

**질의 7**

→ 반자를 격자 천장 형태로 사용한 경우 스프링클러헤드를 천장이 아닌 격자천장(반자)에 집열판을 설치하여 격자에만 설치하여야 하는지? 업무처리 지침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써 천장 상부에 설치가 아닌 반자 하부에 하향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옳은 설치 방법인지?

**회신 7**

→ NFTC 103 2.7.1에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기준에 따라 개방형 격자천장의 폭이 1.2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아래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21. 3. 16. 시달된 ‘개방형 격자 천장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통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천장 윗부분에만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현장이 ‘개방형 격자 천장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만족할 경우 격자천장(반자)에 헤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 천장 윗부분에 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8**

→ 기존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의 면적이 519.25 제곱미터입니다. 이 중에 1층의 일부분 약 34 제곱미터 정도를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 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헤드 기준 개수 적용이 기존의 10개에서 20개로 변경되어야 하는지?

**회신 8**

- NFTC 103 표 2.1.1.1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2항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라고 일부 용도변경으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되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34m<sup>2</sup> 이므로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유도등이며 소화기 및 유도등을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 용도변경 특례사항은 용도변경되는 그 면적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라는 의미이며 용도변경 면적에 따라 설치되지 않는 기준 소방시설은 그대로 유지·관리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는 기존 설비이며 용도변경되는 면적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시설이 아니므로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는 현행 10개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9

-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 기준개수를 30개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비고]의 내용으로 각각 용도별 수원과 펌프를 분리하여 비주거(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스프링클러 기준개수 20개, 주거(공동주택) 스프링클러 기준개수 10개로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 회신 9

- NFTC 103 표 2.1.1.1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고에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경우 기준개수가 30개로서 장소가 아닌 건축물 규모(층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의 건축물이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복합건축물인 경우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 적용하여 전층 기준개수 30개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아파트의 경우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므로 NFTC 103 표 2.1.1.1 [비고]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분리하여 별도의 수원을 설치하는 경우 아파트 부분 기준개수 10개, 기타 시설 기준개수 30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도면을 가지고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10

-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기준의 화재안전기준 및 지침 중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 회신 10

- NFTC 103 2.7.8에 “2.7.7.2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 2.7.8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cm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청 업무지침(2019. 10. 22.)에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에 관계없이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30cm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시달되었습니다.
- 현장에서 상기 사항 적용시 화재안전기준 원칙조항, 단서조항 또는 예외규정(소방청 업무지침)을 현장 헤드 설치 구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나(우선순위 없음) 살수장애는 물론 헤드의 감열 문제까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장애물로 인해 헤드의 감열시간 지체)
- 따라서 살수장애, 헤드의 감열 문제 등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지참하시어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에 관한 질의

### 관계 법령

- 2.7.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3) 병원·의원의 입원실
- 2.7.7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7.7.1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cm 이상으로 한다.
- 2.7.7.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 2.7.7.3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2.7.7.1 및 2.7.7.2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7.8 2.7.7.2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 2.7.8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cm 이하로 할 수 있다.

### 질의 1

→ 해당 실에는 조기반응형 헤드를 적용하고, 천장 속은 별도 방호구역으로 보고 일반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적용해도 가능한지?

### 회신 1

→ NFTC 103 2.7.5 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3) 병원·의원의 입원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기반응형 헤드는 반응시간지수(RTI)가 50이하인 속동형 헤드로 비교적 화재의 강도가 크지 않고 물적 피해보다는 인적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 따라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목적에 비추어 상기 2.7.5 의 장소에는 천장과 반자 사이에 설치하는 헤드 또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 2007.12월 이전부터 운영중인 노유자생활시설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시설내에는 일반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강화된 소방 시설에 노유자생활시설이 신설됨과 조기반응형헤드 관련해서 교체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 2**

- 소방시설법 시행령[시행 2012. 2. 5.]부 칙 <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유자 시설이 된 것으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시설은 노유자생활시설로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 설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다만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12. 2. 5.] [별표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당시 [별표 4]에 따라 유효하게 설치했을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될 것입니다.
- 이에 당시 NFSC 103[시행 2011. 11. 24.] 제10조(헤드) 제5항을 확인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체설비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었다면 노유자시설의 거실에 조기반응형헤드를 설치(교체)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3**

-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외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와 준비작동식 벨브를 같이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3

- NFTC 103 2.3.1.7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 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7.5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NFTC 103 1.7.1.12에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 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NFTC 103 2.3.1.7 규정에 따라 화재발생 즉시 방사할 수 있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질문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질의 4

-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도 공동주택 내 거실에 포함되어 조기반응형헤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신 4

- NFTC 103 2.7.5 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3) 병원·의원의 입원실”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거실’이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거실에 조기반응형헤드를 설치하며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주차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상기 규정과 유사한 장소(예, 의원의 입원실, 공장 내 숙직실 등)의 경우 설치 장소의 특수성 등을 검토하여 조기반응형헤드의 설치 검토는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헤드제외 장소 기준에 관한 질의

### 관계 법령

- 2.12.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12.1.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2.12.1.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2.12.1.5.1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 m 미만인 부분
- 2.12.1.5.2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 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 2.12.1.6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 m 미만인 부분
- 2.12.1.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 m 미만인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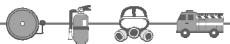
### 질의 1

- 실외기실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여부?



### 회신 1

- NFTC 103 2.12.1.1 내지 2.12.1.14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실외기실이 2.12.1.1의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란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거나 개방된 것과 같은 상태의 장소로 해석되며, 일반적으로 외기에 접한 면의 상당 부분이 개방되어 있는 고정식 루버의 경우 외기에 개방된 것으로 볼수 있으나, 수동 또는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외기의 개방된 정도 등 자세한 현장사항에 대해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 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 NFTC 103 2.12.1.1 에서 언급된 목욕실, 화장실과 같은 용어에서의 실은 하나의 공간으로 마감을 한 공간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화장실과 바로 이웃하고 천장마감 처리한 실이 있을 때, 천장마감한 실 천장 윗부분이 화장실과 맞닿아 있는 경우에도 화장실로 간주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외하여도 되는지?

## 회신 2

→ NFTC 103 2.12.1.1에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도 효율성이 적은 장소를 규정한 것으로 화장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해당 규정은 질의하신 화장실 등의 천장 마감과는 별개로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효율성에 따라(현장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을 도면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질의 3

→ 천장과 반자사이가 2.7m 이고 그 사이에 스텀재질의 덕트설비, 전기배관(스틸전선관 or 금속가요전선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선관내에 난연성 전선이 포설되어 있습니다. 천정과 반자사이에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는데 헤드 추가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3

→ NFTC 103 2.12.1.5.2에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헤드를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의 ‘가연물’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전적 의미는 불에 잘 타거나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스텔재질의 덕트설비, 전기배관(스틸전선관 or 금속가요전선관)내에 난연성 전선소화배관 등은 가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스프링클러헤드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세부적인 반자 속 설비 설치 내역 확인 필요)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4

- 하향식 피난구 설치장소 헤드설치 제외여부?



#### 회신 4

- NFTC 103 2.12.1.14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이라고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 8. 14. 전국 소방관서로 시달된 「2023년 7월 소방시설 아고라 토론회 결과」에 따라 ‘아파트의 대피공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로 스프링클러헤드 제외 가능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 이와 유사한 장소에 NFTC 301에서 규정하는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대피실, 건축법령에 따른 아파트에 하향식피난구를 ‘발코니가 아닌 대피공간에 준하는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으며, 대피공간에 준하는 전용실 내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경우 스프링클러헤드를 제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대피공간에 준하는 전용실 인지 여부는 현장상황 파악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5

- 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 제외와 관련하여 ①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로 봐야 하는지? ② 배관면적만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로 봐야 하는지?



## 회신 5

- 2011. 4. 시달된 지침에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중 하나라도 1.2m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①의 경우와 같이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 크기 기준으로 상기 지침을 적용하면 됩니다.



## 질의 6

- 건축물 면적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장비 반입구입니다. 장비반입구는 항상 내부가 막혀있고, 셔터도 항상 내려와있습니다. 헤드설치 여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6

- NFTC 103 2.7.1 에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 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 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폭이 1.2 m를 초과하는 것에 스프링 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므로 장비입구방면이 건축법 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도 폭이 1.2 m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장비반입구가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구조일 경우 헤드제외와 관련하여 관할 소방서와 협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및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 바랍니다.

**질의 7**

- 천장 면에 단열재 100mm가 붙어 있으며 반자는 석고 마감입니다. 천장과 반자사이는 1m 미만 960mm입니다. 이런 경우 헤드를 설치하되 상하향식 헤드를 설치 해야 하는건지 하향식 헤드만 설치해야 하는건지 질의합니다.

**회신 7**

- NFTC 103 2.12.1.6 에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1 m 미만인 부분”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의 “천장”이란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합니다. 단열재는 그 하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천장의 재질이 콘크리트라면 단열재가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불연재로 취급됩니다.
- 따라서 천장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1 m 미만이라면 반자 사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하식 헤드만 설치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 바랍니다.

**질의 8**

- 주차장 램프부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8**

- NFTC 103 2.12.1.1 에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어 주차장의 경우 주차 Ramp는 경사로에 해당하여 헤드제외 검토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상기 규정은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를 반드시 제외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여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및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설치여부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9

→ 화장실 내부에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위치가 구획되어 있을 경우, 세면기 설치 공간에 헤드를 제외할 수 있는지?



### 회신 9

→ NFTC 103 2.12.1.1 에 스프링클러헤드 제외장소로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1권 640p)에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장소”에 해당하며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를 반드시 제외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여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질문의 ‘세면기’가 불연재인 타일 등으로 내부마감이 되어 있고 화기 취급 등이 없어 화재위험성이 대체적으로 낮은 화장실과 유사한 공간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제외를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감시제어반관련

### 관계법령

- 2.10.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10.2.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10.2.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 2.10.2.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2.10.2.4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2.10.2.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2.10.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10.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10.3.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2.10.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10.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10.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m<sup>2</sup> 미만의 불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2.10.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질의 1

- NFSC 103 (2004.06.04) 제13조 2항 2호에도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 경우 스프링 클러용 펌프도 작동이나 정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하여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둘 중 하나만 가능해도 된다면 현행 법상 기동 또는 정지만 가능해도 문제가 안 되는지요?



###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0.2.2에 따라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거나’의 뜻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거나2「조사」’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흔히 ‘하다’가 ‘온다’로 해석 됩니다. 따라서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기동·정지’ 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OR’이 아닌 ‘AND’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 질의 2

- 스프링클러 예비펌프로 엔진펌프를 사용중인데 엔진펌프 판넬에서 배터리의 방전 상용전원 공급등에 확인 단자가 있으나, 별도로 수신기에서도 배터리의 방전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하는지?



## 회신 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0.2.3에 따라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2.1.2(5)에 따라 옥상수조를 대신하여 펌프고장 시의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전원인 발전기에 연결된 펌프 설치 또는 이에 준하는 엔진펌프 즉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설치하는 예비펌프입니다.
- 따라서, 2.10.3.2에 따라 감시제어반을 겸용으로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복합식수신기)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예비 펌프의 배터리의 공급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3

- 감시제어반실이 1층(피난층)에 위치하였으며 벽들이 외기에 면한 경우에도 4m<sup>2</sup>미만의 불박이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외기에 면한부분이 위에 2.10.3.3.1의 규정을 전부다 따라가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회신 3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0.3.3.1에 따라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내부를 내화구조의 벽 등으로 구획하는 것으로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건축법」제5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등 ‘방화구조’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4

→ 2.10.3.3.1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의 근거에서 28mm유리가 망입유리를 포함하는 28mm인 유리인지 망입유리가 복층으로 되는 구조인지?

#### 회신 4

→ 질의하신 2.10.3.3.1에 따른 28mm 이상의 ‘복층유리’는 2장의 유리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한 것을 말하며, 유리내부에 금속망을 삽입한 ‘망입유리’와 상이합니다.

#### 질의 5

→ 화재안전기술기준의 내용대로 지하1층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 설계도면대로 지하2층 역무실에 설치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회신 5

→ 감시제어반 설치장소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10.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대상물은 이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질의

##### 관계 법령

- 2.11.1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본 공고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4.12.1.〉
- 2.11.1.1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표시형밸브와 세대별 개폐밸브는 그 설치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신설 2024.12.1.〉
- 2.11.1.2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2.2.1에 따를 것 〈신설 2024.12.1.〉
- 2.11.1.3 배관은 2.5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 배관은 2.5.2에 따른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4.12.1.〉
- 2.11.1.4 간이헤드와 송수구는 2.6 및 2.8에 따라 설치할 것 〈신설 2024.12.1.〉
- 2.11.1.5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12.1.〉



##### 질의 1

-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 상수도직결형이 아닌 캐비닛형으로 설치해도 무방한지?



##### 회신 1

- NFPC 103A 제14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본 고시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 가압수조, 캐비닛, 상수도직결형)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시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주택의 경우 유지·관리의 간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필로티주차장이 많고 펌프실(기계실)을 만들기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순수 다세대에 필로티 주차장에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세대 내에만 설치되어야 하는지?

**회신 2**

-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주택 세대 내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방수압 및 방수량 기준, 주거형 헤드 적용)로서 주차장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NFCC 103 2.12.1.1 에 스프링클러헤드 제외 장소로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소규모 필로티 주차장의 경우 헤드제외 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설치 목적과 헤드제외 조건에 따라, 연립 다세대주택의 필로티 주차장 부분은 헤드설치 시 효용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해당되어 헤드제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주차장 부분을 제외한 세대 내부에만 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3**

- 연립 및 다세대 건축물의 경우 수신반을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3**

- NFPC 103A[시행 2024. 12. 1.]제14조(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제5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제어반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포소화설비



### 포헤드 설치 수량에 관한 질의

#### 관계 법령

2.9.2.2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text{m}^2$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2.9.2.5.1 정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식 (2.9.2.5.1)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질의 1

→ 가로 20m, 세로 10m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바닥면적에 따라야 하는지? 수식에 따라야 하는지?



#### 회신 1

→ 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상기표의 의미는 단지 건물의 바닥면적만을 고려한 최소 소요 헤드수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건물의 형태나 헤드 배치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바닥면적으로만 헤드 수량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값이다. 따라서 설계자가 해당 건물에 대해 실제 포 헤드를 설계할 경우 건물의 형태에 따른 헤드배치를하고(정방형이나 장방형 등) 또 헤드간 거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앞의 표의 수량보다 헤드 수량은 설계 시 증가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NFTC 105 2.9.2.2 규정은 건물의 바닥면적만을 고려한 최소 소요 헤드수를 말하므로 NFTC 105 2.9.2.5.1 규정에 따른(건물형태 반영) 헤드 수량을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5. 가스계소화설비



가스계소화설비 방호구역 벽체 강화유리 사용 가능 여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 관계 법령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 질의 1

→ 가스계소화설비를 사용하는 기능실 내부 벽체 및 출입문이 강화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유리의 강도, 두께 및 내열, 내화성능과 관계없는지



#### 회신 1

→ 가스계소화설비 방호구역에 벽체나 출입문을 강화유리로 적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제의 누설량 및 약제 방사에 따른 과압형성시 파손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방호구역에 강화유리 적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전장치 배출가스 주차장 배출 가능 여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 관계법령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2.3.4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배관의 최소 사용설계압력과 최대허용압력 사이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의 배관 등을 통하여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치로 용전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질의 1

→ 안전장치가 지하에 설치된 경우나 건축물 외부로부터 거리가 먼 경우 지하주차장과 같은 장소에 방출도 가능한지



#### 회신 1

→ 건물 내 지하주차장을 건축물 외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6. 제연설비



### 옥상에 송풍기 설치시 방화구획 여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11.1.5.5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신설 2024. 4. 1.>



#### 질의 1

→ 송풍기를 실내가 아닌 옥상에 설치할 경우, 방화구획 의미가 없으므로 별도의 실을 구획하지 않고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방수형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데 문제없는지



#### 회신 1

→ 송풍기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방화구획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외기와 접한 옥탑층 부속실에 급기댐퍼 설치 여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 질의 1

→ 옥탑층에 소방시설 중 제연배기는 배기 해야 하는 복도 또는 거실이 없고 및 차압 감지관은 차압을 감지할 옥내가 없어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실에 자동차압급기댐퍼 설치 여부 질의합니다.



#### 회신 1

→ 옥상층의 경우 '옥내'로 간주할 만한 실(室)이 없고, 전실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이 외부와 연결되는 경우 급기 및 배기 댐퍼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옥상층을 제외한 제연댐퍼가 설치된 층의 제연성능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 7.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배관 겸용 관련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 관계 법령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2.2.1.1 주배관의 구경은 100 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주 배관의 구경이 100 mm 이상인 옥내 소화전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개정 2024.7.1.〉



#### 질의 1

→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를 겸용하여 설치하고 이후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배관과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분리하면 옥내소화전설비 배관과 연결송수관설비 배관 겸용 가능한지.



####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을 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배관을 분리하더라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할 수 없습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8.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생활용수 겸용 수조 내진설계 적용 여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관계 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4조(수원)

-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질의 1

- 생활용수와 소화용수가 겸용인 수조를 사용할 때, 생활용수 배관(수조와 연결된 급수 배관 전체)에도 내진을 적용하여 버팀대 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1

- 생활용수 배관에도 소화용수와 겸용하는 수조에 영향이 없도록 일부 내진설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수검지장치 전, 후단에 지진분리이음 설치 여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관계법령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5조(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질의 1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해설서 포함)에는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의 전, 후단에 커플링 설치 기준 또는 해설서가 없어 현장마다 의견이 다른 바,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 바로 전, 후단에는 어떤 커플링(유동식 또는 고정식)을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1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서 유수검지장치 전, 후단에 지진분리이음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드レン처설비 내진설계 적용 여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관계 법령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제2조(적용범위)

-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배수배관 등은 제외한다.



#### 질의 1

- 기존 건축물에 인접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복사열 차단을 위해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도 내진설계를 하는지?



#### 회신 1

- 드렌처설비의 단독 구성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내진설계 적용 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와 배관(가입송수장치 포함)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진 시 드렌처설비의 파손으로 내진설계 적용 대상 설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 CPVC배관 벽체 관통 시 내진설계 적용 기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관계 법령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6조(배관)]

③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이 25mm 내지 100mm 미만인 경우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mm 이상, 배관의 호칭구경이 100mm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100mm 이상 커야 한다.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 보다 50mm 미만의 더 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2.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내화재음성능이 인정된 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메워야 한다. <개정 2022. 12. 1.>
- ④ 소방시설의 배관과 연결된 타 설비배관을 포함한 수평지진하중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질의 1

- CPVC 구경 50mm 이하인 배관이 벽을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 이격거리를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관통 슬리브를 안 써도 된다는 건가요?



#### 회신 1

- CPVC 배관 제조사별 배관과 연결부속을 포함한 유연성에 관한 특성인 허용응력, 변위 등의 성능을 확인하여 지진분리이음의 각도 변위보다 큰 경우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 제6조제3항제1호의 단서(배관의 호칭구경 보다 50mm 미만의 더 큰 관통부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 할 수 있다.)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방배관 지진분리이음 설치 관련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관계 법령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7조(지진분리이음)】

- ② 구경 65mm 이상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 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m 미만인 수직직선배관은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0.9m~2.1m 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 질의 1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제7조2항1호 “0.9m ~ 2.1m 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기준입니다. 이경우 지진분리이음 제외 가능한 건지



### 회신 1

→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해야 하나, 0.9m ~ 2.1m 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은 설치해야 합니다.

# VII

## 화재안전기준(전기)







# 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수신기 설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제외 기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201)

### 관계 법령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

2.2.1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제외기준 없음)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3.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4.5 다음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질의 1

→ 비상경보설비에 한해서 수신기 설치장소는 법적기준이 없으므로 어느 곳에 두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자동화재탐지설비 기준을 꼭 따라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회신 1

→ 질의와 같이 비상경보설비의 수신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3.1를 준용하여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 질의 2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제외 기준이 있는지?



### 회신 2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제외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5를 준용하여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2. 비상방송설비



### 비상방송설비 안내멘트 및 안내방송 등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202)

#### 관계 법령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 2.1.1.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내로 할 것
- 2.1.1.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질의 1

→ 호텔 객실 내 화재감지기 화재감지 시 복도 발신기 옆 지구경종에서 경보가 발생하는데, 이 때 저희가 사업특성상 고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확인 전 방송으로 “화재감지기 확인중입니다”라는 멘트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신 1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비상방송 멘트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비상방송의 내용은 대상물의 구조 및 재실자 현황 등에 맞도록 멘트를 지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화재 감지에 대한 신호에 대해 ‘화재감지기 확인 중’이라고 할 경우 피난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화재 초기대응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2

→ 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해 방송 송출 후 안내방송을 할 경우 화재 탐지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방송이 송출되었으므로 안심하라는 방송을 하여야 하는가?

### 회신 2

→ 비화재보로 인한 비상방송 후 안내방송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재실자들의 상황판단 및 안정을 위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 질의 3

→ 수신반의 비상방송중지 후 일반방송을 해도 되는지?

### 회신 3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2.1.1.8에 따라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으로 규정되어 비상방송 중에는 비상경보 외의 방송이 차단됩니다.  
→ 따라서, 화재 경보 시 현장을 확인하여 실제 화재일 경우 우선 경보 세대가 피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화재 장소 및 크기, 재실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 층에 일반방송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비상방송설비 설치 위치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202)

### 관계 법령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 2.1.1.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 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 W) 이상일 것
- 2.1.1.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질의 1

- 기존 건물 1개층을 인테리어를 통해 5개의 회의실 및 홀로 나누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벽 등이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력벽이 아닌 가벽으로 회의실을 만들게 되면 2개실은 비상방송 스피커가 있으나 나머지는 설치가 되지 않는데 각 실에 비상방송 스피커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1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2.1.1.2 에 따라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평거리 기준으로 25m이하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실이 구획되어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없을 시 실 내부에도 설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4조(음향장치)에 질의가 있습니다. 4조 1호에 보면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와트)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1호에서 의미하는 확성기의 음성입력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 1호에서 이야기하는 실외 3와트, 실내 1와트는 몇 db(데시벨)로 생각하면 될까요?



## 회신 2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2.1.1.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 W) 이상일 것”라고 규정되어 있어 소리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경종에 대한 성능을 표현하는 방식(dB)과 상이합니다.
- 제조사의 제품에 따라 음압이 상이하나, 3W 확성기는 음압(1M/1W)에서 86dB의 값을 가지는 제품사양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3W의 전력이 가해지는 경우 90dB의 값을 가지는 것을 기준으로 질의하신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90dB 이상이 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비상방송설비 경보방식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202)

### 관계 법령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시행 2022.12.1.] 제4조

5.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2.1.1.7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질의 1

→ 6층 공동주택 건축물로 기존에는 비상방송설비 우선경경보방식에서 신법적용으로 일제경보방식으로 적용 가능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 회신 1

→ 질의와 같이 기존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제4조제5호에 따라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로 규정되었으나, 현행 기준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을 조정하여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 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대상물은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현행 기준에 따라 경보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재실자들이 급격히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 등 ‘피난 상의 장애’가 우려되오니, 대상물의 구조와 재실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경보방식을 관할 소방서(예방안전과)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자동화재탐지설비



#### 공동주택 세대 내 감지기 교체 가능 여부 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203)

##### 관계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2

2.4.2 다음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2.4.2.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1)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2.4.3.1 감지기(자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질의 1

→ 세대 내 거실, 침실의 광전식 감지기가 오작동하는데 차동식 감지기로 교체할 수 있는가?



##### 회신 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2.5에 따른 공동주택의 취침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세대 내 감지기 설치 업무처리지침(‘19.6.26.)」에 따라 침실과 거실(통상적 개념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거실 및 침실에는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신속한 감지를 위해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질의 2

→ 드레스룸 및 팬트리에 열감지기로 설계되어 있는데 감리측은 연기감지기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 회신 2

→ 침실 및 거실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 발코니, 대피공간, 드레스룸, 알파룸, 펜트리, 다용도실, 현관 등에는 열감지기 등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교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질의 3

→ 아파트 세대 내 베란다. 실외기실의 현재 취부되어 있는 차동식 감지기가 온도차에 너무 민감하게 동작하고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여 소방시설업무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광전식연기 감지기로 교체하여 하는데 소방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소방서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회신 3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4.2.5에 따른 공동주택의 취침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세대 내 감지기 설치 업무처리지침(19.6.26.)」에 따라 침실과 거실(통상적 개념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외 드레스룸, 팬트리, 발코니 등은 정온식을 포함한 열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또한, 실외기실에 광전식 연기감지기는 온도차에 따른 결로, 습기 등으로 비화재보 우려가 높으므로 ‘방수형 열감지기’ 등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감지기 교체 관련하여 관할 소방서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4

→ 저희 사무실에 가운데 에어콘 및 난방기가 천장에 설치 되어 있으며 바로 옆 30CM 거리에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NFPC 203 제7조(감지기)의 3의 1에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연구실 내부가 4M\*4M로 협소하여 1.5미터 이격시 문근처나 구석에 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데 구석으로 설치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되도 되나요?



#### 회신 4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1에 따라 ‘감지기(자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화재감지기가 급기구 근처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열 또는 연기가 감지기로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 실제 화재발생 시에 감지가 늦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급기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기류는 화재시 연소생성물(연기, 열기류등)의 접근을 방해하고, 특히 겨울철 천장형 난방시스템의 급기구를 통해 나오는 기류가 직접 차동식감지기에 접촉되는 경우는 감지기의 비화재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를 제외하는 것은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는 기준 때문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관련 연기감지기 작동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기유입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에어컨이라도 감지기 성능에 아예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며 모델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 감지기 성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건축민원담당)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기존 계단 연기감지기 제외 기준(15m 미만)에 따른 열감지기 설치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203)

### 관계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2015.1.23. 이전)

제7조제2항제1호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 질의 1

- 기존 계단 연기감지기 제외 기준(15m 미만)에 따라 연기감지기를 제외할 수 있는데  
열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회신 1

-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2항제1호에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규정되었었으나, 계단 및 경사로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현행 기준에서 15m 미만의 것은 제외하도록 하던 것을 화재감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개정(2015.1.23.)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전의 15m 미만의 계단은 연기감지기의 설치가 제외되며, 열감지기는 적응성이 없으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기준에 따라 경계구역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불꽃감지기 등 감지기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 연결 여부 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203)

###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 수신기 및 2.3 감지기**  
2.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text{ m}^2$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4.3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질의 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5조2항에 따라 축적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나와있으나, 해당 조건 외에 외부에 접하여 날씨 등 영향을 받거나, 공사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비화재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 등에도 축적 기능 적용이 가능한지?  
→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조건인 경우 하나의 수신기에 불꽃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가 연결되어 있을 때 축적 기능 적용이 가능한지?



### 회신 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2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text{ m}^2$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2.4.3에 따라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로 감지기와 수신기 동시 축적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2.4.1에 따른 불꽃감지기 등 감지기(축적방식의 감지기 제외)는 수신기의 축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대상물의 구조 및 환경에 따라 축적기능 사용을 관할 소방서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단실의 감지기 감지 시 경보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203)

### 관계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5.1

2.5.1.2.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질의 1

→ 계단실의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였을 때 경보방식 기준은?



#### 회신 1

→ 계단실 감지기 감지에 따른 경보방식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으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5.1.2.1에 따라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으로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므로 계단실의 감지기가 층 기준에 맞도록 설정되었다면 기준에 맞게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계단실의 특성상 굴뚝효과로 인해 빠르게 전층 경보를 발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재실자들이 급격히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병목현상 및 연기흡입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 음향장치만 경보를 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상물의 구조 및 피난 동선 등 현황에 맞게 경보방식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오니 건축 협의부서인 관할 소방서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지구음향장치의 단락보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203)

###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3

2.2.3.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 질의 1

→ R형 시스템인 저희 현장은 경종이 중계기에 각각 1개씩 개별로 결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계기에 휴즈나 단락장치는 없습니다. 경종이 개별 선로이기에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개의 경종선로에 단락보호기능을 설치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선로이기 때문에 설치가 따로 필요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 회신 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3.9에 따라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단락보호장치설치, 각 층별 지구경종 선로 간 휴즈, 예비배선 추가 시공, 아이솔레이터 시공 등 ‘유효한 조치’를 통해 단락보호를 하여야 하므로 현장 상황에 맞는 단락보호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신 R형 시스템이 단락 보호기능이 있는 중계기를 사용하거나, 아이솔레이터 (회로격리기)를 설치하였다면 ‘유효한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건축민원담당)에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2

→ 기존의 대상물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 되었을때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기존 특정 소방대상물의 지구음향장치가 단락이 되었을때에도 단락보호장치가 설치 된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2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1.3.1에 따라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소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건축허가 접수 시점으로 법령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소방시설법령 또는 화재안전기준 제·개정 등으로 소급적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소방시설법령 또는 화재안전기준 제·개정 시 부칙에 소급 적용 관련 기간 등을 명시하여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감지기 제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203)

### 관계 법령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4.2

2.4.5 다음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4.5.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2.4.1 단서의 감지기로서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4.5.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2.4.5.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2.4.5.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4.5.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4.5.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text{m}^2$  이하인 것

2.4.5.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연기감지기에 한한다)

2.4.5.8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질의 1

→ 피트공간(PD실)의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2\text{m}$ 를 초과 하고 수평단면적은  $5\text{m}^2$  이하인 장소일 경우 피트공간(PD실)에 NFTC 203, 2.4.5.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수평단면적이  $5\text{m}^2$  이하인 것'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지기 설치 제외가 가능 한지 질의 드립니다.



### 회신 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5.6의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이란 파이프덕트, 덕트피트 등을 말하는 것으로 파이프나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공간으로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유로를 말합니다. 다만 유로 점검을 위한 점검구(1개소에 한함)를 만든 경우 그 크기가  $1\text{m}^2$ 이 하이고, 두께는  $1.5\text{mm}$ 이상의 철판 또는 60분 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 조임한 유로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피트층, 피트공간(EPS, TPS실, PS실, AV실)은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피트공간이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에 따라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1.2m 미만인 경우에는 감지기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관련 도면 등을 지참하시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2

→ 감지기 제외 기준에서 “고온도 및 저온도”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온도를 말하는 것인가요?(조건: 냉동창고의 상시온도가  $-18^{\circ}\text{C}$ ,  $-25^{\circ}\text{C}$ 인 현장)



## 회신 2

→ 질의와 같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5.4에 따라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온도의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설서에 따라 고온도 및 저온도의 기준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영하( $-10 \pm 2$ )  $^{\circ}\text{C}$ 에서 영상 ( $50 \pm 2$ )  $^{\circ}\text{C}$ 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 것으로 하였습니다.

→ 질의하신 냉동창고는 일반적으로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하나,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라고 판단할 경우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예방과)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질의 3**

- 아파트 중문 설치 시 감지기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가?

**회신 3**

- 감지기를 각 실마다 설치할 것이라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대상물의 경계구역에 화재 감지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 기준(NFTC 203)」2.4.5를 제외한 모든 경계구역 내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중문을 설치한 현관(구획된 실) 내에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그 실이 완전 연소되어 외부(감지기가 설치된 거실 또는 다른 실)로 확대 연소될 때까지 화재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재를 조기 감지할 수 있도록 각 구획된 실마다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지기의 종류에 따라 감지면적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2.4.5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12에 따라 '헤드의 설치제외 장소' 외의 구획된 장소에는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야 하며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현관에는 중문 설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질의하신 단독경보형감지기(건전지타입)는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1.7.1.3에 따라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1.7.1.4에 따라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지 않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9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 할 수 있으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면제 여부를 관할 소방서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4

→ 화장실 내부에 유리칸막이 샤워부스가 설치되었으나 샤워부스 유리칸막이가 바닥 및 천정까지 막히고 유리문이 설치되는 구조입니다. 샤워부스에서 샤워를 할 경우 화장실 내부에 수증기로 인하여 오작동이 우려되는 사항이나 샤워부스가 천장 및 바닥까지 막힌 상태이므로 샤워부스를 제외한 주택의 화장실 내부에 자동화재탐지설비용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회신 4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TC 203)」2.4.5.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감지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에 샤워시설이 있을 경우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샤워시설이 없을 경우에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대상물은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화장실 공간과 샤워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나 샤워 후 수증기 등으로 인한 감지기 오작동이 우려되오니 감지기 제외와 관련하여 건축 허가동의부서인 관할 소방서(건축민원담당)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4. 유도등 및 유도표지



### 체육관 내부 벽면에 거실통로유도등 설치 높이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303)

#### 관계 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2.3.1.2 거실통로유도등

1.7.1.5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2.3.1.2.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 등을 설치할 것

2.3.1.2.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질의 1

→ 학교체육관 내부 측면의 벽면에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벽면에 설치를 하니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그럼 1m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아니면 거실통로 유도등의 기둥에 설치로 보고 1.5m 이하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아니면 거실통로 유도등의 설치처럼 1.5m 이상으로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 회신 1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3.1.2.3에 따라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거실통로유도등은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나, ‘기둥에 설치 할 경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 시 연기(농연)는 부력 등에 의해서



천장에서부터 바닥으로 하강하게 되고, 피난 시 대부분은 몸이 바닥을 향해 숙이고 이동하게 되며, 이에 따라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통로유도등은 천장보다는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거실통로유도등보다 복도통로유도등이 화재 시 더 유효하게 피난을 유도할 수 있기에 벽체 등이 있으면 복도통로유도등을 개방된 공간에 기둥이 있는 곳에서는 기둥에, 기둥마저 없는 경우에 천장에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대상물의 구조 및 현황, 시설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통로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지참하시어 관할 소방서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입체형 및 수직 추가설치 유도등 피난층(1층) 제외 여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303)

### 관계 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2.2 피난구 유도등 설치기준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 질의 1



☞ 입체형 및 수직 추가설치 유도등 설치 기준은 1층(피난층)을 제외할 수 있는지?

### 회신 1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2.2.3에 따라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이므로 질의하신 1층이 피난층\*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 유도등 기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303)



### 질의 1

→ 옥외계단에 계단통로유도등 설치 제외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회신 1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옥외에 유도등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해 옥외에도 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 다만, 옥외 계단에 방수형 등 계단통로유도등을 설치하더라도 우천 등의 유지관리 상 어려움이 우려되며, 계단통로유도등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지상으로 피난하는 데 장애가 없는 경우(외부 계단에 유효한 조명이 설치된 경우)라면 계단통로유도등 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련 도면 및 사진을 지참하시어 관할 소방서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2

→ 주차장 경사로(램프)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2

- 주차램프, 에스컬레이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5항에 의한 직통계단(경사로)에 해당 하지 않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피난에 도움이 될 경우 피난경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난동선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질의 3

→ 공연장 객석 출입문 상단에 비상구표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이 너무 밝아 공연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무대 장면 전환을 위해 암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비상구표시등 때문에 전환하는 모습이 객석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이에 따른 조치 방안은?

 회신 3

→ 질의하신 비상구표시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1.7.1.2에 따른 ‘피난구유도등’로 판단되며,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합니다.

→ NFTC 303 2.7.3.2.2에 따라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3선식 배선을 할 수 있으며, ‘3선식 배선’이란 평상시에는 유도등을 소등 상태로 유도등의 비상전원을 충전하고, 화재 등 비상시 점등 신호를 받아 유도등을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하는 방식의 배선을 말하므로, 유도등 배선 교체와 관련하여 관할 소방서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옥외안테나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505)

#### 관계 법령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2.3 옥외안테나

- 2.3.1.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 2.3.1.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2.3.1.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건축법 시행령】

######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질의 1

- 무선통신보조설비 옥외안테나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가?

#### 회신 1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일반적으로 지하층의 수신 장애에 따른 서비스이며, 기존의 접속단자 (1층 옥외)를 대신하는 설비로 지상의 지휘부에서 사용합니다. 또한, 건축상 옥상을 출입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선통신보조설비 옥외안테나는 옥상에 설치 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 지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6. 소방시설의 배선공사



###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온내소화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102)

#### 관계법령

##### 【온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

표 2.7.2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 (1) 내화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1.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울레핀 절연 전선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
2. 0.6/1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울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울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물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5. 0.6/1 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상의 높이의 물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6. 300/500 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C)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 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내화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비고]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KS C IEC 60331-1과 2(온도 830 °C / 가열시간 120분) 표준 이상을 충족하고 난연성능 확보를 위해 KS C IEC 60332-3-24 성능 이상을 충족할 것	

###### (2) 내열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1.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울레핀 절연 전선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0.6/1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울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3.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울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물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 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 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C)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 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내화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질의 1

→ NFTC 102 표 2.7.2 의 내화배선 관련, 9번에 해당하는 전선을 합성수지관 수납하여 자갈밭 혹은 포장도로에 25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면 내화배선이 인정이 되는지

### 회신 1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표 2.7.2(1)에 따라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선을 합성수지관을 포함한 전선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바닥에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 시공하는 공사방법은 내화배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자갈밭 혹은 포장도로가 내화구조 동등 또는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 및 건축 감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옥외의 배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1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케이블의 공사 및 금속덕트 공사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감리 또는 관할 소방서(건축민원담당)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2

→ 난연CD관은 반자가 없는 개방된 천정(노출천정)이나 옥내노출배선으로는 시공이 가능한가요?

### 회신 2

- 소방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표 2.7.2에 따라 HFIX 전선 등을 합성수지관을 포함한 전선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바닥에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 시공하는 ‘내화배선’ 또는 전선을 전선관에 수납하여 시공하는 ‘내열배선’으로 구분됩니다.
- 질의하신 난연 CD관을 이용할 경우 매설하지 않았으므로 ‘내화배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열배선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내열배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3**

→ FR-8 내화 케이블을 금속관 등 전선관에 수납하여 시공할 수 있는가??

**회신 3**

- 내화전선(FR-8)은 케이블 형태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케이블 트레이 등 노출공사방법에 따라 설치합니다. 노출용 내화 케이블을 금속관 등에 넣어 밀폐상태로 사용하게 되면 금속관내의 온도가 축적되어 케이블의 절연내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다만, 배선연속성 등 시공상 부분적으로 매립배관 등의 전선관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전선관의 내부공간 확보(점적률이 낮도록)가 필요하며, 전선관의 길이가 짧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FR-8케이블을 금속제 전선관에 수납하여 시공할 경우 금속제 특성상 방열이 되지 않아 절연내력 및 허용전류가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속제가 아닌 전선관으로 내화성능 및 절연내력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적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

→ FR-8(고내화)케이블을 ACF Cable로 만들면, ‘관로내 온도상승 절연파괴’에 저촉받아 위반인지, 혹은 ‘관로내 온도상승’보단 ACF는 케이블외피와 같으므로 위반사항이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회신 4**

→ 질의하신 FR-8케이블을 ACF CABLE로 만들어 내화성능 및 절연내력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적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5

→ NFTC 102 2.7.2의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표에서 배선용 덕트, 금속덕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는 알루미늄 덕트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신 5

→ 소방용 덕트는 내화성능을 갖는 덕트로 화재 시 고온과 연기에 견디며, 일정 시간 동안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와 구조가 요구됩니다.

→ 질의하신 알루미늄 덕트의 재료인 알루미늄은 화재 시 높은 온도에서 쉽게 변형되거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은 약 600°C 이상의 온도에서 녹기 시작 하므로, 화재 상황에서는 덕트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용 덕트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내화 인증을 받은 강재 덕트 또는 내화 처리가 된 특수 덕트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6

→ 소방전기 공정으로써 경량벽체 속에 난연CD 전선관 배관(소화전 간선, 시각경보기, 유도등) 가능 여부

→ 복도구간 방화석고보드 경량벽체 속에서 난연CD 전선관 배관에 대한 가능 여부

### 회신 6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표2.7.2 (2)내열배선에 공사방법에는 난연CD관(합성수지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표2.7.2 (1)내화배선에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 난연CD관(합성수지관)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내화구조 등등 또는 이상의 성능이 있는 방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방화석고보드의 내화성능이 있는 것인지 관련기관(국토교통부 건축 안전팀) 및 건축 감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소방 감리자 및 관할 소방서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7**

→ FR-3케이블 사용가능 여부

**회신 7**

- 화재안전기준 개정함에 따라 2022년 6월 5일 이후 내열전선을 사용할 수 없으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표 2.7.2의 사용전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열전선(FR-3 케이블 등)은 공사 방법과 관계없이 사용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내화성능이 KS C IEC 60331-1과 2(온도 830 °C/가열시간 120분) 표준 이상을 충족하고 난연성능 확보를 위해 KS C IEC 60332-3-24 성능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FR-8 등)을 사용 하시거나, 표 2.7.2에 따른 사용 전선을 금속관 등에 수납하여 공사 방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VIII

## 화재안전기준(용도별)







# 1. 도로터널



## 도로터널의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 관계 법령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4조]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 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 질의 1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에서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제5조(소화기), 제6조(옥내소화전) 등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설비만을 뜻하는 것인지 또는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만을 뜻하는 것인지?



#### 회신 1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에 따른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소방설비 설치 시에도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준용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질의 2

→ 옥내소화전 설치 시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 준수하는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내용까지 준수해서 설치기준으로 봐야하는지



#### 회신 2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에 대해서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2. 지하구



### 지하구 연소방지설비 설치 기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 관계 법령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2.4.2 연소방지설비의 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4.2.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4.2.2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2.4.2.3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4.2.4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살수헤드를 설치할 것

#### 질의 1

→ 연소방지설비 헤드를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천장이나 벽면 중 어느 한 곳에만 설치하면 되는지?

#### 회신 1

→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하구의 특성상 천장에 다양한 시설이 있을 수 있어 천장면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벽면에 측벽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벽면에 설치 시 해당 바닥면을 균일하게 살수하고 케이블 등을 모두 방호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질의 2

→ 환기구, 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수헤드 설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 회신 2

→ 화재 시 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어느 방향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를 보호해야 하므로 출입구 기준 양쪽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 질의 3

→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하면 700m 이내마다 살수 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1,000m라면 살수 구역을 몇 개를 설정해야 하는지? 간격이 700m를 초과하면 작업구 등에 설치하는 것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작업구 등은 무시하고 거리만 기준으로 하여서 설정하면 되는 건지?

## 회신 3

→ 환기구 사이 간격이 1000m 라면 환기구마다 양측에 설치하는 살수구역 외 사이에 700m 이내마다 설치해야 하므로 살수구역 1개가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판단되며, 출입구 없이 사이에 설치되는 살수구역은 화재확산 방지 목적만 가지고 있으므로 방화벽 설치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3. 건설현장



#### 건설현장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5조

#### 관계 법령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5조]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1)」 제4조제1호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2.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미터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3. “소화기”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장소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질의 1

→ 터널 공사를 하는 건설현장입니다. 터널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터널 내 소화기 및 소화 설비 설치에 관한 법령을 찾아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나와있는 내용이 없어 질의 합니다.



#### 회신 1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제5조 2호 규정에 따라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미터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터널의 각 출입구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미터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현장의 비상경보장치 연동 여부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7조

### 관계 법령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7조]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질의 1

- 제7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2.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위 내용에서 연동관련 부분은 의무사항인가요?



### 회신 1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7조에서 규정하는 연동 여부는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설현장은 각종 소음 등으로 인해 작동시킨 하나의 경보장치(경종)만으로는 작업장 전체에 효과적인 경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사장 내 경종 연동을 권고 드립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4. 전기저장시설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범위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608)

####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25.]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따른 동의대상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 및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3호마목, 별표 5 제1호가목2), 같은 호 라목13), 같은 표 제2호라목12), 같은 호 마목9) 및 별표 6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 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전기저장시설부터 적용한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시행 2022. 2. 25.]

부칙 <제2022-1호, 2022.02.07.>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전기저장 시설부터 적용한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시행 2022. 12. 1.]

부칙 <제2022-68호, 2022.11.25.>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에 따른다.



#### 질의 1

→ 당 현장 건축허가를 2022년 2월 25일 이전인 2020년 8월 경에 받았고, 전기저장 시설에 대한 설치공사계획서를 2022년 2월 25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적용을 안 받는것이 맞는지요?



## 회신 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2. 25.] 부칙 제4조에 따라 '별표 2 제23호마목, 별표 5 제1호가목2), 같은 호 라목13), 같은 표 제2호라목12), 같은 호 마목9) 및 별표 6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전기저장시설부터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기 허가 대상이더라도 ESS 설치공사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하지 않았다면, 전기저장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인가 신청 시점의 기준을 따라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전기저장시설의 배터리용 소화장치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608)

### 관계 법령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 2.3 배터리용 소화장치

2.3.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2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으로 2.9.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전기저장 장치에 대한 소화성능을 인정받은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1.>

2.3.1.1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된 경우

2.3.1.2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다른 건축물, 주차장, 공용도로, 적재된 가연물, 위험물 등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된 경우



### 질의 1

☞ 옥외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배터리용 소화장치 필수 설치인지?



### 회신 1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2.3.1에 따라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된 경우 및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다른 건축물, 주차장, 공용도로, 적재된 가연물, 위험물 등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체하여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 전기저장시설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608)]

### 관계 법령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 2.4 자동화재탐지설비

2.4.1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4.2 화재감지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2.4.2.1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7.2에 따른다)

##### 2.6 배출설비

2.6.1.3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할 것



### 질의 1

→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사는 옥외에 설치되는 ESS Container 내부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감지기 적용 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회신 1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2.4.1에 따라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여건상 화재 수신기의 설치 또는 상시 감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에 질의하신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2.4.2.1에 따라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질의 2**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10조의 [배출설비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하여야 한다]에서 말하는 화재 감지기는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화재 감지기 이면 되는건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경우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 감지기를 사용하라고 명시되어있으나, 배출설비에 대한 감지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신 2**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2.4.1에 따라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2.4.2.1에 따라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배출설비는 2.6.1.3에 따라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할 것’으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아닌 기동용 감지기에 해당하므로, 감지기의 2.4.2.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608)]

**관계 법령****[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 2.9.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 방법에 따라 2.9.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받은 성능 범위 안에서 2.2 및 2.3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2.9.2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과 관련된 시험은 다음의 시험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 2.9.2.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9.2.2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 2.9.2.3 2.9.1에 따라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으로 화재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는 비영리 국가 공인시험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질의 1

- 인증받은 ESS 화재 자동소화시스템을 옥내형 ESS 설비에 적용 가능토록 소방법규 (NFPC607)를 개정 할 여지가 있는지?

### 회신 1

- 전기저장장치의 배터리 실에는 기본적으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제6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7조에 따라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된 경우와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건축물, 주차장, 공용도로, 적재된 가연물, 위험물 등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된 경우에 한해 제13조 제2항에 명시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등의 시험기관에서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소화성능을 인정받은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옥내 전기저장시설은 화재 시 열폭주 및 연소확대 우려로 스프링클러설비를 배터리용 소화장치로 대체 할 수 없습니다.

### 질의 2

- 당사보유 ESS 배터리 설비에 인증받은 ESS 화재 자동소화시스템 적용 시 NFPC607 제13조 적용 가능한지?

### 회신 2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제13조 관련하여 소방청 공고 제2022-41호 「전기저장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유지기준 특례적용을 위한 표준시험 방법」제5조 및 제6조, 제7조 셀 단위 시험 및 랙 단위 시험(설치 시험)에 따라 전기저장장치의 열폭주 화재 진압 성능 만족 시 NFPC 607 제13조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을 인정받아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스프링클러 설비 및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제외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다만, 질의하신 ESS 화재 자동소화시스템은 소방청 공고 제2022-40호 「전기저장시설에 설치되는 배터리용 소화장치의 성능평가 기준」제7조(배터리용 소화장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제13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범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608)

#### 관계 법령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1.1 적용범위 및 1.5 경과조치 등

-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개별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다.
-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1.6.1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야 한다.



#### 질의 1

- 복합건축물의 경우 예를들어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일경우 근린생활시설까지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사용해야하나요??



#### 회신 1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1.1.1에 따라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별표 4] 비고 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근린생활시설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질의 2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 건축물일때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은 지상층 공동주택 코어 부분과 지하층 코어 및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까지만 적용하고 그외의 지상층 오피스텔과 지하층 코어 및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준이 아닌 각각의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면 되나요?
- 지하주차장이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 안에서 건축 개요 또는 면적상으로 구분되어있을때 법을 구분하여 설치하면 되나요?

## 회신 2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1.1.1에 따라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적용하므로 지하주차장의 공동주택 화재 안전기준 적용 범위는 건축법령 및 주차장법령 등에 따른 건축개요, 주차장면적 등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3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시행일(2024. 1. 1.)이전 당 현장은 현재 피난구유도등이 전층 중형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전층 계단실 방화문과 마감사이의 간격(인방)이 중형규격에 맞지 않아 중형유도등의 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②의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현장이라도 관계인(발주처)에게 유리한 경우 제정기준을 따를수 있다.”는 법조항에 의거하여 하기와 같이 변경후 표현된 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I

II

III

IV

V

VI

VII

VIII



### 회신 3

-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1.5.2에 따라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NFTC 608 2.10.1.1 ~ 2.10.1.3에 따라 공동주택은 소형, 주차장은 중형,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질의 4

- 제4조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은 개별의 화재 안전기준을 따르라고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과 개별화재안전기준의 내용이 상이할 때는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상위법이 어떤 건가요?



### 회신 4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1.6.1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아파트등, 기숙사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질의 5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시행일(2024. 1. 1.)이전 당 현장은 현재 피난구유도등이 전층 중형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전층 계단실 방화문과 마감사이의 간격(인방)이 중형규격에 맞지 않게 좁아 중형유도등의 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②의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현장이라도 관계인(발주처)에게 유리한 경우 제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는 법조항에 의거하여 하기와 같이 변경후 표현된 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 회신 5

-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1.5.2에 따라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2.10.1.1 ~ 2.10.1.3에 따라 공동주택은 소형, 주차장은 중형,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질의 6

- 군사시설 관사 및 간부숙소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아날로그 감지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신 6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21호 사목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은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나, 질의하신 관사 및 간부숙소는 제2조제1호 사목에 해당하므로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의 아파트등, 기숙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 기준(NFTC 608)」2.7.1.1에 따라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공동주택의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 관계법령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2.1.1.1 바닥면적  $100\text{ m}^2$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text{ 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text{ 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3. 균생생활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속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text{ 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4.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text{ 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비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바닥면적의 2배를 해당 특별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 질의 1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표 2.1.1.2 “비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공동주택 소화기 능력단위 산정에서 기준면적의 2배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 소화기 능력단위를 산정할 수 있는지?



### 회신 1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표 2.1.1.2 3호에서 공동주택은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100\text{ 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표 비고에서 소화기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경우에 2배를 해당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소화기구 설치 시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text{ 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608)

### 관계 법령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 2.3.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10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1.6m<sup>2</sup>을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 2.3.1.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cm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질의 1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2.3.1.9에서 “2.7.7.1 및 2.7.7.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의 경우 “2.7.7.3 을 준수하여 헤드를 조명기구 아래로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헤드가 살수방해가 최소화 되는 위치에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 회신 1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2.3.1.9 에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cm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세대 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는 헤드를 위쪽에 설치하여 60cm 규정 및 3D 확보 규정에도 불구하고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헤드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 만약 한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이 지하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 기준 개수가 10개인지? 30개인지?



## 회신 2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2.3.1.1 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10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1.6\text{m}^3$ 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차장으로 다수의 동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의 기준 개수를 10개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공동주택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608)

### 관계법령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
2.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3조의2에 따른다.
3. 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 및 거실을 말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 할 것
4.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할 것

**부칙** 〈제2023-40호, 2023.10.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의 제정 규정은 이 고시가 발령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질의 1

- 하나의 감지기가 단선이 되어도 다른 감지기가 정상 작동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아날로그 감지기 사용에 대한 유예기간 중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통하여 공동주택이 생길 경우 일반감지기를 사용함에도 반드시 4호의 법규를 적용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현장상황에 따른 시공을 할 수 있는지?

### 회신 1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부칙 제1조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의 제정 규정은 이 고시가 발령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였으므로 제11조제1항 제4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공동주택의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608)

### 관계 법령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2.14 비상콘센트

2.14.1 아파트등의 경우에는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질의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m^2$  이상으로 지하층의 모든층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면 지하주차장의 비상콘센트는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수평거리 5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만 추가로 설치하면 되나요?
- 비상콘센트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m^2$  이상일때 수평 거리 25미터마다 설치하라고 되어있지만 공동주택은 3000 $m^2$  이상일때도 50미터마다 설치하면 되나요?



### 회신 1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2.14.1에 따라 ‘아파트등의 경우에는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각 동 계단 출입구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며,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콘센트를 추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6. 창고시설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질의(기계)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609)

#### 관계 법령

- 2.3.1.1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 (1) 냉동창고 또는 영하의 온도로 저장하는 냉장창고
  - (2) 창고시설 내에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시설
- 2.3.1.2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2.3.1.1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m 이하마다 설치할 것. 이 경우 수평거리 15cm 이상의 송기공간이 있는 랙식 창고에는 랙 높이 3m 이하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송기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 2.3.4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4개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2.3.1.4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질의 1

- 지하 1층~지상 4층 창고시설입니다. 지하 1층은 냉동창고와 방재실이 있어 상시근무자는 지하1층의 방재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지상 4층은 사무실과 일반 창고 시설입니다. 지상층 일반창고에는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고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습식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창고 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지상1층~지상4층에는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식 or 준비작동식으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 회신 1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2.3.1.1 에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 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1) 냉동창고 또는 영하의 온도로 저장하는 냉장창고”,“(2) 창고시설 내에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 원칙으로 하되 상기 규정 (1),(2)에 해당 된다면 예외적으로 건식스프링클러설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기 규정 (1),(2)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서류 지침 후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 후 설계 반영 바랍니다.

### 질의 2

- 높이가 2.5m인 랙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3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외 가능한가요?

### 회신 2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2.3.1.2 에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2.3.1.1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m 이하마다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높이가 2.5m인 랙이 있을 경우 인래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질의 3

- 창고시설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 적용 시 소화배관(급수관)의 구경 산정은 어느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회신 3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9.2 에 “교차배관에서 분기 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NFTC 609 2.3.4 에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



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4개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2.3.1.4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창고시설에 라지드롭형 헤드를 설치 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표 2.5.3.3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구경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 질의 4

- 창고시설의 비상전원 설치적용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5에 해당 될 경우 창고시설 옥내소화전 비상전원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지? 창고시설이면 옥내소화전 비상전원 설치규정과 관계없이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 회신 4

-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설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질의 5

-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text{m}^2$  이상이지만 실제 현장 내 랙을  $100\text{m}^2$ 의 소규모로 설치된 경우 설치 대상으로 보아야 하나요?



#### 회신 5

- 2024.1.1. 이후 건축허가등의 접수를 하는 창고시설의 경우 창고시설 내 랙 설치 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시행 2024.1.1.]에 따라 랙 규모와 관계없이 인랙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질의 6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치 시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6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2.3.1.4 에 “2.3.1.1 내지 2.3.1.3에도 불구하고 천장 높이가 13.7m 이하인 랙식 창고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에 따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m 이하마다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창고시설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609)

### 관계 법령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2.5 자동화재탐지설비

- 2.5.1 감지기 작동 시 해당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 2.5.3 영 제11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시설의 감지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5.3.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 2.5.3.2 감지기의 신호처리 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7.2에 따른다.



### 질의 1

- ☞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닌 창고시설의 경우 “감지기 작동 시 해당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신기에 위치가 표시되는 감지기가 아날로그 감지기를 말하는 건지 혹은 일반감지기 한개마다 하나의 회로로 구성하여 수신반에 연결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건지



### 회신 1

-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시설은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일반적으로 R형 수신기 및 주소형 감지기를 통해 ‘수신기에 감지기의 위치가 표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질의하신 대상물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5.3.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날로그방식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의 감지기를 전용 1회로를 구성하여 P형 수신기에 표시한다면, 감지기 작동 시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어 2.5.1에 적합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상물의 구조 및 현황, 추후 증축 계획, 공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할 소방서(예방 안전과)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동등이상의 기능 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중 불꽃감지기도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2**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2.5.3.1에 따라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으로 규정되어있으나, 동등 이상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화재보 예방 및 조기감지를 위하여 감지기 종류를 정하였으므로, 불꽃감지기도 동등 이상의 기능 및 성능에 해당 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다만, 불꽃감지기의 경우 조기감지가 어려우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감지를 못하는 특성이 있어 랙크식 창고 등에 적용할 경우 다른 종류의 감지기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 창고시설의 유도등 설치기준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609)

### 관계 법령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2.6 유도등

2.6.1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 질의 1

→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에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지만, 현재 거실통로유도등 대형 제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거실통로유도등 제품이 없는 경우 중형으로 대체하여 설치해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 회신 1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2.6.1에 따라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대형 거실통로유도등의 형식승인 제품이 생산되지 않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3)」표 2.1.1 [비고] 제1호에 따라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유도등 또는 소형피난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소방산업기술원에 형식승인제품 문의하시고 관할 소방서(건축민원담당)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기획

#### 소방청 화재예방국

화재예방국장 흥영근

소방분석제도과장 박진수

제도계 제도계장 정홍영

노시환, 서민지, 정장호

안전기준계 기준계장 흥성일

이준원, 민정기

소방기술민원센터 센터장 곽현중

김세원, 임선길, 권태민, 차승학

최라령, 장현준, 유창선

### 2025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발행처 |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TEL. 1661-9119

FAX. 044-715-7621

| 발행일 | 2025년 1월

| 인쇄처 | 덕성기획(TEL.044-864-8863)

〈비매품〉

